

2023. 12. 11.(월) 10:00

제309회 달성군의회(정례회)  
제 12 차 본회의

# 검 토 보 고 서



달 성 군 의 회



#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검토보고서

1. 의안번호: 제2413호
2. 제 출 일: 2023년 11월 24일
3. 제 출 자: 양은숙 의원 등 3인

## 4. 제안사유

-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47조의 2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인사청문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군수가 요청하는 인사청문대상자(지방공단의 이사장,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를 의회에서 검증함으로써 그 임명에 대해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해당 직위에 대한 책임성과 윤리의식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 5.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에 대하여 정의(안 제1조)
- 군수가 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을 규정함(안 제2조)
-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과 활동기간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제4조)
- 인사청문, 요청안 첨부자료, 요청안의 회부, 위원의 질의, 증인 등의 출석요구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제9조)

- 인사청문경과 보고, 자료제출요구,검증에 대해 규정함(안 제10조~제12조)
- 인사청문회의 공개의 원칙을 규정함(안 제13조)
- 인사청문대상자의 보호, 제척과 회피, 주의의무에 대해 규정함(안 제14조~제17조)

## 6.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대구광역시 달성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7.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군수가 인사청문을 요청하는 후보자에 대하여 인사청문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인사청문대상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였음
-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에 있어 군수가 인사청문 요청시 인사청문 업무를 담당하는 위원회를 명확히 하기 위해 조례 제2조 각 호 해당 직위 소속기관 소관 상임위원회에 타 상임위원회 위원 2명 이상을 포함하여 8명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였음.

- 인사청문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세부적 절차를 명시하였으며, 첨부서류 제출 외에도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증인 출석요구 및 관련자료 제출요구 등을 통해 객관적 자료수집이 가능하도록 함
- 본 조례안은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인사청문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인사청문대상자가 해당 직위에 임명 전 실효성있고 투명한 인사청문을 통해 집행부의 공정한 인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 참고로 현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62개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17개 지자체는 입법예고중에 있음

-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제1항 및 제3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사청문대상)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장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해 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는 경우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1.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립한 달성군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
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출자출연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전단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기관장
  - 가. 달성교육재단
  - 나. 달성복지재단
  - 다. 달성문화재단

제3조(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 등) ① 의회는 제2조에 따라 인사청문을 요청받은 후보자(이하 “인사청문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해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군수가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하 “요청안”이라

한다)을 의회에 제출한 때에 구성되는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8명으로 하되,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제2조 각 호 해당 직위 소속기관 소관 상임위원회(이하 “소관 상임위원회”라 한다) 위원장과 협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를 제외한 타 상임위원회 위원을 2명 이상 포함하여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 다만, 폐회기간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의장이 선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은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행정지원 업무는 요청안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이 수행한다.

**제4조(위원회의 활동기간)** 위원회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요청안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1일로 한다. 다만, 제7조제3항에 따라 기간이 정해진 때에는 그 연장된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 제2장 인사청문회의 운영 및 절차

**제5조(인사청문)** ① 인사청문은 법 제47조의2제2항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열어 인사청문대상자를 출석하게 하여 질의하고 답변과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을 청취하는 등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요청안 첨부자료)** 의회에 제출하는 요청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직위에 대한 군수의 임명후보자 결정 사유서

2. 가족관계증명서 등 주소지 이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직업·학력·경력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이력서

나.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다. 경력증명서

라.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마.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4.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병역신고사항

5.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신고사항

6. 최근 5년간 국세·지방세 일체에 대한 납부 및 체납실적사항

7. 범죄경력사항

8. 개인정보제공동의서

9. 그 밖에 직무수행능력에 관해 의회에서 요청하는 자료

**제7조(요청안의 회부등)** ① 의장은 군수가 요청안을 의회에 제출한 때에 즉시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회에 회부하며, 인사청문이 끝난 후 위원장으로 하여금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의회는 제1항에 따라 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해 의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 군수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 줄

것을 의회에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질의 등)**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선서를 들은 후 10분 이내의 범위에서 모두(冒頭)발언을 청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대상자의 선서는 다음과 같이 한다.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③ 위원 1명당 질의시간은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④ 위원회에서의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일괄질의 등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⑤ 위원이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해 질의하려는 경우 질의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인사청문회 개최 48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지체없이 질의요지서를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⑥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질의요지서는 인사청문회 개최 6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인사청문회 개최 4일 전까지 그 질의요지서가 인사청문대상자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해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질의요지서를 받은 인사청문대상자는 인사청문회 개최 48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⑧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규정은 서면답변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9조(증인 등의 출석요구)** 위원회가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그 출석요구서가 늦어도 출석요구일 5일 전에 송달되도록 해야 한다.

**제10조(인사청문경과 보고)**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인사청문과 관련된 중요 증거서류를 첨부한 인사청문경과 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긴급한 때를

제외하고는 전체의원에게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배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4조 및 본조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치지 못한 때는 의장은 요청안을 바로 본회의에 부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인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만, 폐회, 휴회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인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은 이를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의장은 제2항에 따라 본회의에서 의결된 사항 또는 제3항의 보고에 따른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지체없이 군수에게 송부해야 한다.

**제11조(자료제출요구)** ① 위원회는 그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인사청문대상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기관에 대해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구를 받은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검증)** 위원회는 인사청문대상자의 인사청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의결로 검증을 행할 수 있다.

**제13조(인사청문회의의 공개)** 인사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1. 군사·외교 등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기업 및 개인의 적법한 금융 또는 상거래 등에 관한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계속(繫屬)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영향을 미

치는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명백한 경우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경우로서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4조(인사청문대상자의 보호)** 위원회에 출석한 인사청문대상자·증인·참고인 등이 답변을 하거나 증언 등을 할 때 특별한 이유로 인사청문회의 비공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인사청문회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인사청문회의 비공개를 요구한 사람은 비공개 이유를 비공개회의에서 소명해야 한다.

**제15조(답변 등의 거부)** 인사청문대상자는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답변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사청문대상자는 거부 이유를 비공개회의에서 소명해야 한다.

**제16조(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인사청문회 참여를 배제하고 다른 위원으로 변경 선임하여 인사청문을 하게 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유가 있는 위원은 위원회 위원장에게 해당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의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피신청을 받은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피를 허가할 수 있다.

**제17조(주의의무)** ① 위원은 허위사실임을 알고 있음에도 진실인 것을 전제로 하여 발언하거나 위협적 또는 모욕적인 발언을 해서는 안된다.

② 위원, 소관 상임위원회 전문위원 및 사무직원은 인사청문을 통해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안된다.

**제18조(준용규정)** 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인사청문회의 절차 등에 관

하여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달성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이사장은 군수가 임면(任免)한다.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되, 제1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1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56조의3에 따른다. 다만, 「지방공기업법」 제5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추천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 「지방자치법(법률)」 (2023.3.21. 일부개정, 2023.9.22. 시행)

제47조의2(인사청문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 중 조례로 정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123조제2항에 따라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부지사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시장
  3.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의 사장과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의 이사장
  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기관장
-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후 그 경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③ 그 밖에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 「지방공기업법(법률)」 (2023.3.21. 타법개정, 2023.9.22. 시행)

제58조(임원의 임면 등) ①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 ② 사장과 감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면(任免)한다. 다만, 제50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공사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사장과 감사(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히 감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를 임명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2020.6.9. 일부개정, 2020.12.10. 시행)

제6조(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①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운영의 타당성 등
2. 제9조제4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에 대한 해임 또는 해임 요구
3.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제외 대상기관의 선정
4.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영진단 대상기관의 선정
5. 제30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경영진단 결과 필요한 조치
6. 제30조제4항에 따른 조치 제외기관의 선정
7. 그 밖에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출자·출연 기관 운영과 경영관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부시장·부지사(행정업무를 총괄하는 부시장·부지사를 말한다),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의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 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대통령령)」 (2023.11.16. 타법개정, 2023.11.16. 시행)

제56조의3(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법 제58조제3항 및 제7항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는 공사에 두며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다만, 공사를 설립하는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4명과 그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으로 구성한다.

1.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2. 그 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
3. 그 공사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

②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인 당연직이사 또는 임원후보 공개모집에 응모하려는 임원은 제1항제3호에 따라 추천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기 위한 이사회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경영전문가
2. 경제관련단체의 임원
3.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4. 공인회계사
5. 공기업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④ 공사의 임·직원(비상임이사를 제외한다) 및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의회의원을 포함한다)은 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 ⑤ 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추천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 ⑦ 공사는 임원의 임기만료나 그 밖의 사유로 임원을 새로 임명하려면 지체 없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의회에 추천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⑧ 추천위원회는 추천된 자가 임원에 임명되는 때까지 존속한다.
- ⑨ 추천위원회는 추천위원회 회의의 심의·의결 내용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⑩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사의 정관으로 정한다.

**□ 「대구광역시 달성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조례)」**  
(2019.12.30. 일부개정·시행)

**제8조(이사장)** ① 이사장은 군수가 임명하며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②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제11조(임원추천위원회)** ① 공단의 임원 추천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에 위원회를 두며 비상설위원회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56조의3에 따른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단의 내규로 정한다.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의안번호: 제2410호

2. 발 의 일: 2023년 11월 23일

3. 발 의 자: 광동환의원 등 3인

## 4. 제안사유

-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교육 및 학예 진흥을 위해 별도의 교육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함으로써 교육자치 확대를 실현하고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여 달성군민에게 양질의 교육환경 등을 제공하고자 함

## 5. 주요내용

- 조례 목적에 부합하도록 제명 변경
-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규정 신설(안 제3조제2항 및 제3항)

## 6. 관계법령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 7.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으로 교육경비를 교육비 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여 달성군민에게 양질의 교육환경 등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9항〉

- ⑨ 시·도 및 시·군·자치구는 관할구역의 교육·학예 진흥을 위하여 제2항 및 제8항 외에 별도 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제명을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를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육경비 보조 등에 관한 조례” 로 변경하고
- 군수는 관할구역의 교육·학예 진흥을 위하여 별도 경비를 교육비 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으며,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의 지원기준, 산출방법, 전출시기 등은 군수와 대구광역시 교육감 또는 대구광역시 달성교육지원청 교육장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 군에서 교육청 등 교육비 특별회계로 교육비를 지원하여 학교 보조사업의 효율성을 높여 관내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교육청 등과의 교육 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개정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를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육경비 보조 등에 관한 조례” 로 한다.

제1조 중 “제11조제8항” 을 “제11조제8항 및 제9항” 으로 하고, “경비를 보조함에 있어” 을 “경비를 보조하거나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함에 있어” 로 한다.

제3조의 제목 “(교육경비의 보조)” 를 “(교육경비의 보조 등)” 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 제목 외의 부분) 중 “지원” 을 “보조” 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군수는 관할구역의 교육·학예 진흥을 위하여 제1항 외에 별도 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의 지원기준, 산출방법, 전출시기 등은 군수와 대구광역시교육감 또는 대구광역시달성교육지원청 교육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급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을 “제3조제1항에 따라 각급학교에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로 한다.

제5조 중 “제3조” 를 “제3조제1항” 으로 한다.

제6조 중 “교육경비” 를 “제3조제1항에 따른 교육경비” 로 하고, “따른다” 를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4조(보조사업의 범위) 군수가 각급 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 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1. ~ 2. (생략)

제5조(보조기준액의 제한) 군수가 하나의 회계연도 동안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각급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교육경비 보조금액은 해당 회계연도 군세(세외수입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8 범위로 한다.

제6조(준용규정) 교육경비의 보조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출시기 등은 군수와 대구광역시 교육감 또는 대구광역시달성교육지원청 교육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보조사업의 범위) ----제3조제1항에 따라 각급학교에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

1. ~ 2. (현행과 같음)

제5조(보조기준액의 제한)-----  
-----제3조제1항-----  
-----  
-----  
-----  
-----.

제6조(준용규정) 제3조제1항에 따른 교육경비-----  
-----  
-----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법률)」 (2023.10.24. 일부개정·시행)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① 시·도의 교육·학예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부담하되, 의무교육과 관련된 경비는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원 중 교부금과 제2항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하고, 의무교육 외 교육과 관련된 경비는 교육비특별회계 재원 중 교부금, 제2항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수업료 및 입학금 등으로 충당한다.

② 공립학교의 설치·운영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도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각각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예산에 계상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증감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지방세법」 제151조에 따른 지방교육세에 해당하는 금액
2. 담배소비세의 100분의 45[도(道)는 제외한다]
3. 서울특별시의 경우 특별시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통세 중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목적세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 「지방세법」 제71조 제3항 제3호 가목에 따라 특별시에 배분되는 지방소비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광역시 및 경기도의 경우 광역시세 또는 도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목적세, 「지방세법」 제71조 제3항 제3호 가목에 따라 광역시 및 경기도에 배분되는 지방소비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5, 그 밖의 도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도세 또는 특별자치도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목적세, 「지방세법」 제71조 제3항 제3호 가목에 따라 그 밖의 도 및 특별자치도에 배분되는 지방소비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천분의 36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세목의 월별 징수내역을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시·도의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도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세목의 월별 징수액 중 같은 항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하는 금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다음 달 말일까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되, 전출하여야 하는 금액과 전출한 금액의 차액을 분기별로 정산하여 분기의 다음 달 말일(마지막 분기는 분기의 말일로 한다)까지 전출하여야 한다.

⑤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전출금(轉出金)의 차액은 늦어도 다음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⑥ 시·도의 교육감은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되는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미리 해당 시·도지사와의 협의하여야 한다.

⑦ 시·도교육위원회는 제6항에 따라 편성된 세출예산을 감액하려면 미리 해당 교육감 및 시·도지사와의 협의하여야 한다.

⑧ 시·도 및 시·군·자치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⑨ 시·도 및 시·군·자치구는 관할구역의 교육·학예 진흥을 위하여 제2항 및 제8항 외에 별도 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⑩ 시·도지사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의 회계연도별·월별 전출 결과를 매년 2월 28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교육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의안번호: 제2420호

2. 제 출 일: 2023년 12월 6일

3. 제 출 자: 달성군수

## 4. 제안사유

- 일몰이 도래한 군세 감면사항으로서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현행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일몰종료로 사문화된 조문 삭제 및 감면 관련 근거 법률 변경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 5. 주요내용

- 일몰이 도래한 지역특산품생산단지 및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기한 3년 연장(안 제5조 및 제7조)
  - 감면기한 연장 : 2023년 12월 31일 → 2026년 12월 31일
- 우수 향토기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요건 명확화(안 제9조제1항)
  - 취득하는 부동산 → 우수기업인 선정일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
- 고용창출기업 감면 관련 근거 법률 변경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안 제10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와 제19조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와 제24조
- 승용차요일제 참여 자동차에 대한 감면 규정 조문 삭제(안 제11조)
  - 대구광역시 승용차요일제 지원조례 제9조 : 대중교통마일리지 지급으로 변경
- 부칙에 규정된 조례의 유효기간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개정(안 부칙 제2조)

## 6. 관계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대구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 7.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군세 감면 적용시한이 종료됨에 따라 세제지원이 필요한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일몰 종료로 사문화된 조문 삭제 및 법률 변경사항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 일몰이 도래한 지역특산물생산단지 및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고
- 우수 향토기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요건을 우수기업인 선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 고용창출기업 감면 관련 근거 법률 변경에 따른 인용 조문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와 제19조”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와 제24조”로 정비하고
- 승용차요일제 참여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혜택이 「대구광역시 승용차요일제 지원조례」 제9조 대중교통마일리지 지급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삭제하였으며, 부칙 제2조에 규정된 조례의 유효기간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변경하였습니다.
- 위와 같이 지역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 등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해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3년 12월 31일” 을 “2026년 12월 31일” 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3년 12월 31일” 을 “2026년 12월 31일” 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대구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를 “「대구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로, “취득하는” 을 “우수기업인 선정일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으로 한다.

제10조 본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와 제19조” 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와 제24조” 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조례 제2727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 중 “2023년 12월 31일” 을 “2026년 12월 31일” 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대한 감면) ① 「대구광역시 승용차요일제 운영규정」에 따른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세의 100분의 5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경감하는 때에는 해당 자동차가 승용차요일제 참여자동차로 확인되는 일자를 기준으로 그 이후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이를 경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확인일자를 기준으로 그 이후의 과세기간(해당 연도에 한정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경감하지 아니하며, 이미 경감된 자동차세의 경우에는 이를 추징한다.

1. 승용차요일제 참여자동차가 해당 연도에 5회 이상 승용차요일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승용차요일제 전자인증표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고의적으로 훼손한 경우

조례 제2727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조례 제2727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유효기간) ----- 2026년 12월 31일까지 -----.

## □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 2023. 6. 5.]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7., 2014. 1. 1., 2014. 3. 24., 2020. 1. 15., 2021. 6. 8.>

1.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인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⑧ (생략)

## □ 대구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 2022. 10. 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업”이라 함은 지역 안에 본사 또는 생산시설을 두고 영리활동을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2. “기업인”이라 함은 지역 안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회사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
3. “우수기업인”이라 함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제5조의 규정에 의해 예우 및 지원 받는 기업 및 기업인을 말한다.
4. “기업관련단체”라 함은 기업들이 상호이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

**제4조(우수기업인 선정)** ① 제2조제3항에 따른 우수기업인의 선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0.12.20 조례 제4206호)

1. 시의 노사화합상, 중소기업 대상을 수상하거나 시의 스타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이나 기업인.(개정 2010.12.20 조례 제4206호)
2. 기업활동과 관련하여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기업이나 기업인
3. 기타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기업으로서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거친 기업이나 기업인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대상 및 스타기업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8. 12. 30 조례 제4000호).(개정 2010.12.20 조례 제4206호)

③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기업인이나 기업에 대해서는 이를 증명하는 별도의 대장을 만들어 관리 지원한다.(개정 2010.12.20 조례 제4206호)

##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시행 2023. 7. 10.]

**제14조(지역 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① 시·도지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구역의 시·군·구의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 해당 시·도의 지역특화산업을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국가의 성장잠재력과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
2. 지역일자리 창출 및 경쟁력 강화에 미치는 영향
3. 지역의 발전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

②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초광역권의 초광역권산업을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특화산업과 초광역권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해당 산업의 구조 고도화와 투자 유치 촉진, 집적(集積) 및 기반 확충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투자 유치활동 지원, 정보통신 진흥 및 지역 특성에 맞는 중소기업의 창업 여건 개선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지역특화산업·초광역권산업 및 제4항에 따른 지역 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한 시책의 추진 및 추진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기업 및 대학의 지방이전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 중 시·군·구별로 인구과밀·산업입지·산업집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있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의 이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사항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이 지방에 사업장을 신설·증설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사항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성장촉진지역과 특수상황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대학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사항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의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대구광역시 달성군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1. 의안번호: 제2409호

2. 제 출 일: 2023년 12월 6일

3. 제 출 자: 김보경 의원 등 3인

## 4. 제안사유

- 최근 맨발 걷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맨발 걷기 산책로의 조성 요구가 확대됨에 따라 달성군 내 맨발 걷기에 적합한 환경 조성 및 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관심을 유도하고 맨발 걷기를 활성화하여 건강한 군민의 삶을 도모하고자 함.

## 5. 주요내용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및 군수의 책무 규정(안 제2조~제3조)
- 사업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제5조)
- 맨발 산책로 내 금지행위 및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제7조)

## 6. 관계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생활체육진흥법」, 「국민건강증진법」, 「자연공원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 7.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군에 소재한 공원, 자연휴양림 등에 보행자가 맨발 걷기를 할 수 있는 흙길 조성 및 그에 부수되는 시설을 조성·확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근거를 마련하고, 맨발 걷기 문화 확산을 통해 맨발 걷기를 활성화함으로써 군민의 건강 및 체력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최근 암, 뇌졸중 등 중증질환 회복, 혈액순환 등 맨발 걷기 효능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 증대로 맨발 산책로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 맨발 걷기 열풍에 발맞춰 ' 23. 12. 01 기준 63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맨발 걷기 길 조성, 맨발 걷기 대회 등을 통하여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맨발걷기 조례 현황]

구분	광역시	기초	구분	광역시	기초
서울	○	6개	강원	-	2개
부산	-	4개	충북	-	-
대구	○	2개(북구·수성구)	충남	-	1개
인천	○	2개	전북	○	8개
광주	-	3개	전남	-	8개
대전	-	-	경북	○	2개
울산	-	1개	경남	-	6개
세종	○	-	제주	○	-
경기	○	10개			

- 대구광역시의 경우 시를 포함하여 북구·수성구에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현재 도시공원 내 맨발산책로 설치는 총 15곳으로 지속적으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 외 맨발대학 운영(남구), 군위맨발학교 운영(군위군), 2013년 대구에 설립된 대한민국맨발학교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수성구·달서구)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공원시설 중 운동시설의 하나로 “맨발걷기길”을 추가하는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바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생활체육진흥법」에서 국민체육 및 생활체육 진흥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직무를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국민 건강증진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어 군민의 건강생활 실천을 위해 군이 지원할 의무가 있고, 맨발산책로를 공원시설 중의 하나로 확대하고자 하는 법 개정 발의의 취지와도 부합하다고 볼 수 있기에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  
(’ 23.6.1.)]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공원시설”이란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4. ----- ----- -----.
가. ~ 라. (생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u>테니스장, 수영장, 궁도장 등 운동시설</u>	마. <u>테니스장, 수영장, 궁도장, 맨발걷기길 등 운동시설</u>
바. ~ 카. (생략)	바. ~ 카. (현행과 같음)
5. (생략)	5. (현행과 같음)

-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 대구광역시 달성군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생활체육진흥법」 및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건강실천이 가능한 맨발 걷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고, 맨발 걷기 문화 확산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의 생활 속 건강과 체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 산책로”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소재하는 다음 각 목에 따른 장소 중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맨발 걷기용으로 조성하거나 그 용도에 쓰일 수 있도록 관리하는 흙길을 말한다.

가.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길 등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조성 또는 개방된 장소

라. 그 밖에 군수가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장소

2. “맨발 걷기”란 제1호에 따라 조성되거나 관리되는 맨발 산책로를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시책과 사업을 발굴·시행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 ① 군수는 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 전략
2. 맨발 산책로 조성 및 관리·운영계획
3. 그 밖에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 ① 군수는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 산책로의 조성·확충 및 정비
2. 맨발 걷기에 필요한 세족대 등 시설의 설치·보수
3. 맨발 걷기와 관련한 교육 및 홍보
4. 맨발 걷기 대회 등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의 개최
5. 그 밖에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금지행위)**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함으로써 군수가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조성·확충 및 정비한 맨발 산책로 내에서 맨발 걷기 활성화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자연공원법」 제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지행위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따른 금지행위
3.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6 각 호에 따른 금지행위 및 같은 법 제23조의4 각 호에 따른 금지행위
4. 제2조제1호라목의 장소에서의 위 각 호에 준하는 금지행위

② 군수는 군민이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 계도하여야 한다.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①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맨발 걷기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자연공원법(법률)」(2023.4.18. 일부개정, 2023.7.19. 시행)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연공원”이란 국립공원·도립공원·군립공원(郡立公園) 및 지질공원을 말한다.
2. “국립공원”이란 우리나라의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이하 “경관”이라 한다)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라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
3. “도립공원”이란 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제4조 및 제4조의3에 따라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
- 3의2. “광역시립공원”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이하 “광역시”라 한다)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제4조 및 제4조의3에 따라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
4. “군립공원”이란 군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제4조 및 제4조의4에 따라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
- 4의2. “시립공원”이란 시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제4조 및 제4조의4에 따라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
- 4의3. “구립공원”이란 자치구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제4조 및 제4조의4에 따라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
- 4의4. “지질공원”이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이를 보전하고 교육·관광 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36조의3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인증한 공원을 말한다.
5. “공원구역”이란 자연공원으로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6. “공원기본계획”이란 자연공원을 보전·이용·관리하기 위하여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공원계획과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7. “공원계획”이란 자연공원을 보전·관리하고 알맞게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용도지구의 결정, 공원시설의 설치, 건축물의 철거·이전, 그 밖의 행위 제한 및 토지 이용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8.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이란 동식물 보호, 훼손지 복원, 탐방객 안전관리 및 환경오염 예방 등 공원계획 외의 자연공원을 보전·관리하기 위한 계획

을 말한다.

9. “공원사업”이란 공원계획과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10. “공원시설”이란 자연공원을 보전·관리 또는 이용하기 위하여 공원계획에 따라 자연공원에 설치하는 시설(공원계획에 따라 자연공원 밖에 설치하는 진입도로, 주차시설 또는 공원사무소를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27조(금지행위)** ① 누구든지 자연공원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연공원의 형상을 해치거나 공원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2. 나무를 말라죽게 하는 행위
  3. 야생동물을 잡기 위하여 화약류·덫·올무 또는 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을 뿌리는 행위
  4. 제2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하거나 그물을 설치하는 행위
  5.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상행위
  6.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야영행위
  7.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주차행위
  8.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취사행위
  9. 지정된 장소 밖에서 흡연행위
  10. 대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시설에서 음주행위
  11. 오물이나 폐기물을 함부로 버리거나 심한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
  12. 그 밖에 일반인의 자연공원 이용이나 자연공원의 보전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② 공원관리청은 제1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를 지정할 경우에는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법률)」(2021.1.12. 타법개정, 2022.1.13. 시행)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원녹지”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과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는 다음 각 목의 공간 또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시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公共空地) 및 저수지

나. 나무, 잔디, 꽃, 지피식물(地被植物) 등의 식생(이하 “식생”이라 한다)이 자라는 공간

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간 또는 시설

2. “도시녹화”란 식생, 물, 토양 등 자연친화적인 환경이 부족한 도시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을 말하며,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공간(「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은 제외한다)에 식생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3. “도시공원”이란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다만, 제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9조,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20조, 제21조, 제21조의2,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 제39조, 제40조, 제42조, 제46조, 제48조의2, 제52조 및 제52조의2에서는 나목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제외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공원으로서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이하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 한다)

4. “공원시설”이란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 또는 광장

나. 화단, 분수, 조각 등 조경시설

다. 휴게소, 긴 의자 등 휴양시설

라. 그네, 미끄럼틀 등 유희시설

마. 테니스장, 수영장, 궁도장 등 운동시설

바. 식물원, 동물원, 수족관, 박물관, 야외음악당 등 교양시설

사. 주차장, 매점, 화장실 등 이용자를 위한 편의시설

아. 관리사무소, 출입문, 울타리, 담장 등 공원관리시설

자. 실습장, 체험장, 학습장, 농자재 보관창고 등 도시농업(「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농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위한 시설

차. 내진성 저수조, 발전시설, 소화 및 급수시설, 비상용 화장실 등 재난관리시설

카. 그 밖에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5. “녹지”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녹지로서 도시지역에서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개선하고, 공해나 재해를 방지함으로써 도시경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말한다.

**제49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① 누구든지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원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2. 나무를 훼손하거나 이물질을 주입하여 나무를 말라죽게 하는 행위
3. 심한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4. 동반한 반려동물의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의자 위의 것만 해당한다)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5. 도시농업을 위한 시설을 농산물의 가공·유통·판매 등 도시농업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관리에 현저한 장애가 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도시공원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
2. 동반한 반려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하고 도시공원에 입장하는 행위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금지행위가 적용되는 도시공원 입구에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법률)」 (2023.7.25. 타법개정·시행)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림문화·휴양”이라 함은 산림과 인간의 상호작용으로 형성되는 총체적 생활양식과 산림 안에서 이루어지는 심신의 휴식 및 치유 등을 말한다.
2. “자연휴양림”이라 함은 국민의 정서함양·보건휴양 및 산림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한 산림(휴양시설과 그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산림욕장”(山林浴場)이란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산림 안에서 맑은

공기를 호흡하고 접촉하며 산책 및 체력단련 등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한 산림(시설과 그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산림치유”란 향기, 경관 등 자연의 다양한 요소를 활용하여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5. “치유의 숲”이란 산림치유를 할 수 있도록 조성한 산림(시설과 그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6. “숲길”이란 등산·트레킹·레저스포츠·탐방 또는 휴양·치유 등의 활동을 위하여 제23조에 따라 산림에 조성한 길(이와 연결된 산림 밖의 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7. “산림문화자산”이란 산림 또는 산림과 관련되어 형성된 것으로서 생태적·경관적·정서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큰 유형·무형의 자산을 말한다.

8. “숲속야영장”이란 산림 안에서 텐트와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야영을 할 수 있도록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조성한 공간(시설과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8의2. “산림레포츠”란 산림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험형·체험형 레저스포츠를 말한다.

9. “산림레포츠시설”이란 산림레포츠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10. “숲경영체험림”이란 임업(「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영림업 또는 임산물생산업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경영을 체험할 수 있도록 조성한 산림(산림문화·휴양을 위한 시설과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21조의6(자연휴양림등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자연휴양림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정된 장소 외에서 취사행위 및 흡연행위
2.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3. 그 밖에 자연휴양림등의 운영·관리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23조의4(숲길 주변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숲길 또는 주변의 토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숲길을 훼손하는 행위
2. 다른 사람 소유의 건조물·농작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하는 행위
3.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4. 숲길관리청에서 설치한 표지를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

# 대구광역시 달성군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의안번호: 제2411호
2. 제 출 일: 2023년 11월 23일
3. 제 출 자: 전홍배 의원 등 3인
4. 제안사유

○ 만 나이 정착을 위해 「행정기본법」이 개정되면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외 8건을 일괄정비함으로써 법과 행정을 일치시켜 달성군민의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

○ 개정 대상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수축하금 지급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비슬산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관광객 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5. 개정 조례안 : “붙임”

6. 관계법령 : 「행정기본법」 제7조의2

7. 검토의견

- 「행정기본법」(2022.12.27. 일부개정, 2023.6.28. 시행)에서 나이의 계산 및 표시에 관한 사항이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일괄 정비함으로써 법과 행정을 일치시켜 달성군민의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 대구광역시 달성군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 제1조(「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만 25세이상” 을 “25세 이상” 으로 하고, 제6조제3항 중 “만58세” 를 “58세” 로 한다.

## 제2조(「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수축하금 지급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수축하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이라 함은” 을 “이란” 으로, “만 100세” 를 “100세” 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이라 함은” 을 “이란” 으로 하며, 제5조 중 “만 100세” 를 “100세” 로 한다.

## 제3조(「대구광역시 달성군 비슬산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달성군 비슬산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중 “만 9세” 를 “9세” 로 한다.

## 제4조(「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만 40세” 를 “40세” 로 한다.

## 제5조(「대구광역시 달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달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이라 함은” 을 “이란” 으로 하고, 제3조제1호 중 “만 65세” 를 “65세” 로 한다.

#### 제6조(「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만 65세” 를 “65세” 로 한다.

#### 제7조(「대구광역시 달성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만 12세” 를 “12세” 로 한다.

#### 제8조(「대구광역시 달성군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달성군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만 50세 이상 만 65세 미만인” 을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으로 한다.

#### 제9조(「대구광역시 달성군 관광객 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달성군 관광객 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10조제3호 중 “만 7세” 를 각각 “7세” 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5조(단원의 자격 및 선발) ① 합창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군에 거주하는 만 <u>25세이상</u> 55세 이하의 자로서 음악활동에 관심이 많고 합창단원으로서 자질이 있는 자로 모집한다. 단, 지휘자,반주자, 트레이너 및 솔리스트의 거주지역과 연령은 예외로 할 수 있다.</p> <p>② ~ ④ (생략)</p>	<p>제5조(단원의 자격 및 선발) ① ---- ----- -----<u>25세 이상</u>----- ----- ----- ----- ----- ----- -----</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제6조(단원의 위·해촉) ① ~ ② (생략)</p> <p>③ 지휘자, 반주자, 트레이너 및 솔리스트를 제외한 단원의 정년은 <u>만58세</u>가 되는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p>	<p>제6조(단원의 위·해촉)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 ----- -----<u>58세</u>----- -----</p>

###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수축하금 지급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장수노인”이라 함은 주민등록법상 <u>만 100세</u> 이상인 자를 말한다.</p> <p>2. “장수축하금”이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하는 사회보장적</p>	<p>제2조(정의) ----- ----- ----- 1. -----<u>이란</u>-----<u>100</u> <u>세</u>----- ----- 2. -----<u>이란</u>----- -----</p>

금전을 말한다.	-----
제5조(지급원칙) 장수축하금의 지급 기준일은 주민등록상 <u>만 100세</u> 가 되는 날로 한다.	제5조(지급원칙) ----- ----- <u>100세</u> ----- -----

### 대구광역시 달성군 비슬산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 (생략) 3. “청소년”이란 <u>만 9세</u>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정의) ----- ----- 1. ~ 2. (현행과 같음) 3. ----- <u>9세</u> ----- -----

###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다음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농업인으로 한다. 1.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u>만 40세</u> 이하의 농업인 2. (생략)	제4조(지원대상) ----- ----- --- 1. ----- ----- <u>40세</u> ----- 2. (현행과 같음)

### 대구광역시 달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저소득주민이라 함은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자로서 보	제2조(정의) ----- <u>이란</u> ----- ----- -----

<p>험료의 매월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 보험료 이하인 세대를 말한다.</p>	<p>----- ----- -----</p>
<p><b>제3조(지원 대상)</b> 보험료 지원대상은 제2조에서 정한 세대로서 국민 건강보험공단 대구광역시 달성군지역 가입자이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만 65세</u> 이상 노인 세대</li> <li>2. ~ 3. (생략)</li> </ol>	<p><b>제3조(지원 대상)</b> ----- -----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65세</u> 이상 노인 세대</li> <li>2. ~ 3. (현행과 같음)</li> </ol>

###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현행	개정안
<p><b>제2조(정의)</b> 이 조례에서 “재난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민 중 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달성군에 주소를 둔 주민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 5. · 7. ~ 8. (생략)</li> <li>6. <u>만 65세</u> 이상으로서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세대</li> </ol>	<p><b>제2조(정의)</b> ----- -----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 5. · 7. ~ 8. (현행과 같음)</li> <li>6. <u>65세</u>----- ----- -----</li> </ol>

###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

현행	개정안
<p><b>제2조(정의)</b>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아이”란 <u>만 12세</u> 이하 아동을 말한다.</li> <li>2. ~ 5. (생략)</li> </ol>	<p><b>제2조(정의)</b>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12세</u>----- -----</li> <li>2. ~ 5. (현행과 같음)</li> </ol>

## 대구광역시 달성군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p><b>제2조(정의)</b>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신중년”란 <u>만 50세 이상 만 65세 미만인</u> 사람을 말한다.</p> <p>2. ~ 5. (생략)</p>	<p><b>제2조(정의)</b> ----- -----</p> <p>1. -----<u>50세 이상 65세 미만인</u>-----</p> <p>2. ~ 5. (현행과 같음)</p>

## 대구광역시 달성군 관광객 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p><b>제9조(탑승객 준수사항 및 금지행위)</b></p> <p>① 탑승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운행질서의 유지 및 위해 방지를 위해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p> <p>1. · 3. (생략)</p> <p>2. <u>만 7세</u> 미만의 자는 보호자를 동반하여야 함</p>	<p><b>제9조(탑승객 준수사항 및 금지행위)</b></p> <p>①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2. <u>7세</u>----- -----</p>
<p><b>제10조(이용의 제한)</b>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p> <p>1. ~ 2. · 4. (생략)</p> <p>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u>만 7세</u> 미만의 자,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기 어려운 자</p>	<p><b>제10조(이용의 제한)</b> ----- ----- -----</p> <p>1. ~ 2. · 4. (현행과 같음)</p> <p>3. -----<u>7세</u>----- -----</p>

**참고****상위 및 관계법령** (발췌) 「행정기본법(법률)」 (2022.12.27. 일부개정, 2023.6.28. 시행)

제7조의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 대구광역시 달성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1. 의안번호: 제2412호

2. 제 출 일: 2023년 11월 23일

3. 제 출 자: 최재규 의원 등 3인

## 4. 제안사유

- 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스포츠클럽법」에 따라 스포츠클럽을 통해 전문선수를 양성하고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체육 진흥에 기여하고자 함.

## 5. 주요내용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및 군수의 책무 규정(안 제2조~제3조)
- 스포츠클럽의 지원내용 및 범위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 스포츠클럽의 회계관리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제6조)
- 스포츠클럽의 보조금등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

## 6. 관계법령 : 「스포츠클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 7.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스포츠클럽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는 등 지역사회 스포츠클럽을 지원하고 그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 및 스포츠 클럽의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제3조에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및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스포츠클럽의 지원내용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제6조에 스포츠클럽의 회계관리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스포츠클럽의 보조금등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 국민체육 진흥과 지역사회의 스포츠복지 향상을 위하여 제정된 「스포츠클럽법」을 근거로 지역의 스포츠클럽 사용료 감면, 스포츠클럽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 및 스포츠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등록 스포츠클럽과 지정스포츠클럽 비교]

구분	등록 스포츠클럽	지정 스포츠클럽
대상	모든 체육활동 단체(법인 포함)	등록 스포츠클럽 中(공익적 목적 실현에 초점)
최종권한	지방자치단체 (특별자치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권한의 위임·위탁	지방체육회 (시·군·구체육회)	대한체육회
관련조항	스포츠클럽법 제6조	스포츠클럽법 제9조
신청주기	매월 14~16일(3일간)	연 1~2회
유효기간	없음	3년
특화프로그램 공모	참여 불가	참여 가능

-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 대구광역시 달성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클럽법」 제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달성군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로서, 주사무소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있는 것을 말한다.
2. “지정스포츠클럽”이란 법 제2조제2호를 따른다.
3. “공공체육시설” (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이란 군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관리, 운영 중인 체육시설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3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스포츠클럽의 지속적 육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및 범위) ① 군수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법 제9조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

한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스포츠클럽의 육성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단, 지정스포츠클럽의 경우 법 제13조제1항 및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 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에 대하여 우선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허가신청의 시기, 방법 및 허가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4조 및 제5조를 준용한다.

④ 군수는 법 제15조제3항 및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14조를 준용한다.

**제5조(회계관리)** ① 스포츠클럽은 제4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 및 재정적 지원금(이하 “보조금등”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운용과 회계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② 스포츠클럽은 보조금등을 적정하게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법 제20조에 따라 스포츠클럽 및 지정스포츠클럽에 그 업무 및 보조금등을 지원받은 사항 등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매년 한 차례 이상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도·감독 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스포츠클럽 및 지정스포츠클럽은 시정요구일 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해당 클럽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을 위반한 때에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7조(행·재정적 지원 등) ① 제4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등의 지급 절차 및 관리, 환수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② 군수는 제6조의 지도·감독 결과 스포츠클럽 및 지정스포츠클럽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등을 지급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3호의2 및 제3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스포츠클럽법」 제9조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이하 “지정스포츠클럽”이라 한다)에서 주최(관)하는 경기 또는 행사

3의3. 지정스포츠클럽의 강습 등 체육활동

## □ 「스포츠클럽법(법률)」(2021.6.15. 제정, 2022.6.16. 시행)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포츠클럽”이란 회원의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위하여 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하고 지역사회에 체육활동 진흥을 위하여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지정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 중에서 제9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3. “스포츠클럽회원”이란 스포츠클럽의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에 가입하여 정기적으로 회비를 납부하고 활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클럽의 지원 및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스포츠클럽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시책을 수립하고 스포츠클럽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스포츠클럽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지정스포츠클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 중에서 지정스포츠클럽을 지정할 수 있다.

1. 스포츠클럽과 「학교체육 진흥법」에 따른 학교스포츠클럽 및 학교운동부와의 연계
2. 종목별 전문선수의 육성
3. 연령·지역·성별 특성을 반영한 스포츠 프로그램의 운영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초 종목 및 비인기 종목의 육성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정스포츠클럽이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선수 육성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체육 발전을 위하여 지정스포츠클럽에서 우수한 선수를 발굴·육성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한 선수의 발굴·육성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공유재산의 우선 수의계약 및 사용료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공익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및 제27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체육시설에 대하여 우선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하거나 수의계약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클럽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20조(보고·검사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스포츠클럽 및 지정스포츠클럽에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업소·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 「스포츠클럽법 시행령(대통령령)」 (2022.6.15. 제정, 2022.6.16. 시행)

**제9조(선수의 육성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다음 각 호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스포츠클럽의 운영비 지원
2. 수준별·종목별 스포츠클럽 대회의 개최와 홍보에 필요한 비용 지원
3. 그 밖에 우수한 선수의 발굴·육성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제11조(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스포츠클럽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스포츠클럽의 행사·강습·훈련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지정스포츠클럽: 사용료의 100분의 100 이하
2.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 사용료의 100분의 80 이하

□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조례)」(2023.9.27. 일부개정·시행)

제3조(명칭 및 위치)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허가신청에 있어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용내역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개인이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료를 납입하고 사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된 것으로 본다.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단체) 이상 경합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대한체육회 또는 그 가맹경기단체 및 회원단체가 주최(관)하는 경기 또는 행사
4.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5. 직장(단체)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6. 경기연습·개인연습·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7.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공연·전람·전시 등 행사

제14조(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이 주최하는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 전액
2. 군을 대표하여 각종 경기대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연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전액
3. 어린이 및 청소년 육성을 위한 학교 주관 경기 행사 : 100분의 30
4. (삭제)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00분의 50
  -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노인복지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경로우대자,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자.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6. 국민체육센터 여성수영 율회원 중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가임(可妊) 여성 : 100분의 10

7. 히딩크 드림필드 풋살경기장 이용 등록장애인 및 장애인 시설·단체 : 전액

8.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 80%이내

② 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따라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면 그 중 감면율이 높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적용한다.

③ 군수는 달성군 소재 각급 학교에서 운영하면서 대구광역시 축구협회에 등록된 축구부가 [별표 2] 체육시설 중 축구장의 무료사용 허가신청을 한 경우 다른 사용신청자들의 대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 1일·주간 4시간 이내를 1회로, 월 5회까지 무료사용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대구광역시 축구협회에 가입된 유소년 축구클럽(단체)가 [별표 2] 체육시설 중 축구장을 일정 기일이나 기간 동안 사용하는 경우, 전용사용료 중 평

#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의안번호: 제2416호

2. 제 출 일: 2023년 12월 6일

3. 제 출 자: 달성군수

## 4. 제안사유

- 관내 대규모 산업단지 및 주거지구 개발에 따른 유지관리대상 도로시설물 증가로 민원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도로정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팀을 분리, 신설하여 책임있는 군정 업무를 수행하고자 함.

## 5. 주요내용

- 조직개편에 따른 개정사항

- 팀 단위 개정사항

- 안 제8조제2항제1호 : 건설과 - 분리

(도로정비 → 도로정비, 도로관리)

- 조례 내 조문의 통일성을 위한 개정사항

- 안 제4조제4항 : 정책사업1·정책사업2·정책사업3 → 정책사업

- 안 제8조제2항제8호 : 공공시설1·공공시설2·기전

→ 공공시설·기계전기

## 6.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25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제14조

## 7.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달성군내 대규모 산업단지 및 주거지구 개발과 인구의 증가에 따라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도로시설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현 건설과 내 도로정비팀을 도로정비, 도로관리팀으로 분리 운영하여 보다 능동적으로 군정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정책사업1·정책사업2·정책사업3”을 “정책사업”으로 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건설행정·도로시설·도로정비·보상”을 “건설행정·도로시설·도로정비·도로관리·보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공공시설1·공공시설2·기전”을 “공공시설·기계전기”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좌·보조기관의 설치) ④ 정책추진단장은 <u>정책사업1·정책사업2·정책사업3</u>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p> <p>제8조(건설도시국) ② 건설도시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p> <p>1. 건설행정·도로시설·<u>도로정비</u>·보상에 관한 사항</p> <p>8. <u>공공시설1·공공시설2·기전에</u> 관한 사항</p>	<p>제4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좌·보조기관의 설치) ④ ----- <u>정책사업</u>----- --.</p> <p>제8조(건설도시국) ② ----- -----.</p> <p>1. -----·<u>도로정비</u>·<u>도로관리</u>·-----</p> <p>8. <u>공공시설</u>·<u>기계전기</u>-----</p>

## □ 지방자치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국이나 실·과·담당관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② 시·군·구 본청의 실장·국장과 과장·담당관의 직급과 실·과·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관할 시·군·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달할 수 있다.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실·국과 실·과·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도와 시·군·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14조(시·군·구의 실장·국장·담당관·과장 등의 직급기준)**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장·국

장·담당관과 과장 등 보조·보좌기관 등의 직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의안번호: 제2417호

2. 제 출 일: 2023년 12월 6일

3. 제 출 자: 달성군수

## 4. 제안사유

- 퇴직자(기계운영) 발생에 따른 직급(직렬)변경 및 교육정책과 교육재단설립TF팀 해체에 따라 발생한 정원 3명에 대한 효율적인 재배치를 위한 정원 조정

## 5. 주요내용

- 직급별 공무원 정원표 개정 : 안[별표 3]
  - 총 정원 : 1,025명 → 1,025명(변동없음)
  - 본청 정원 : 660명 → 658명(△2)
  - 면 정원 : 56명 → 58명(+2)
  - 기타 직급별 세부 인원 조정

## 6.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25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 제30조, 제38조

## 7.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퇴직자 발생에 따른 직급 및 직렬 변경과 교육 재단설립TF팀 해체에 따라 발생한 정원 3명에 대하여 효율적인 재배치를 실시하고, 구지면 인구 증가로 청소팀 신설에 필요한 정원을 산정하기 위한 정원 조정(본청 정원 △2명, 면 정원+2 조정 )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제 호

##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구 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국	직 속 기 관	읍 및 그 출장소	면
총 계	1,025	658	21	111	177	58
정무직 계	1	1				
군 수	1	1				
일반직 계	990	650	21	84	177	58
3급	1	1				
4급	8	5	1	1	1	
5급	43	29	2	2	7	3
6급이하 계	938	615	18	81	169	55
연구직 계	4	4				
연구관						
연구사	4	4				
지도직 계	27			27		
지도관	2			2		
지도사	25			25		
별정직 계	3	3				
5급 상당						
6급상당 이하 계	2	2				
7급상당 이하 계	1	1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별표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구 분	총 계	본 청	의 회 사 무 국	직 속 기 관	읍 및 그 출 장 소	면	구 분	총 계	본 청	의 회 사 무 국	직 속 기 관	읍 및 그 출 장 소	면
총 계	1,025	660	21	111	177	56	총 계	1,025	658	21	111	177	58
정무직 계	1	1					정무직 계	1	1				
군 수	1	1					군 수	1	1				
일반직 계	991	653	21	84	177	56	일반직 계	990	650	21	84	177	58
3급	1	1					3급	1	1				
4급	8	5	1	1	1		4급	8	5	1	1	1	
5급	43	29	2	2	7	3	5급	43	29	2	2	7	3
6급이하 계	939	618	18	81	169	53	6급이하 계	938	615	18	81	169	55
연구직 계	3	3					연구직 계	4	4				
연구관							연구관						
연구사	3	3					연구사	4	4				
지도직 계	27			27			지도직 계	27			27		
지도관	2			2			지도관	2			2		
지도사	25			25			지도사	25			25		
별정직 계	3	3					별정직 계	3	3				
5급 상당							5급 상당						
6급상당 이하 계	2	2					6급상당 이하 계	2	2				
7급상당 이하 계	1	1					7급상당 이하 계	1	1				

## □ 지방자치법

-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 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8조(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규칙의 입법예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나 정원의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규칙의 제정·개정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거나 기구·정원의 감축 또는 하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지만 상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입법예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와 정원의 조정으로 추가로 경비가 드는 조례안을 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하는 경우 그 추가로 드는 경비를 나타내야 한다.

#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의안번호: 제2418호

2. 제 출 일: 2023년 12월 6일

3. 제 출 자: 달성군수

## 4. 제안사유

- 「지방자치법」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개정·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따른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현행 자치법규 입법 절차를 정비하여 법제사무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함.

## 5. 주요내용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관련 규정 소관이 지방의회로 이관됨에 따라, 주민의 조례 제정·개정 또는 폐지 청구 사항 조문 정비(안 제1조, 제9조제4항, 제12조제3항, 제13조)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반영  
(안 제9조제1항, 제14조, 제16조)

## 6.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제78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13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1조, 제2조

## 7.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개정,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따른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현행 자치법규 입법 절차를 정비하여 법제사무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사항과 주민의 조례 제정 또는 폐기 청구에 필요한 연서하여야 할 주민수를” 을 “사항을” 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66조의3” 을 “「지방자치법」 제78조” 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12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4장(제13조)을 삭제한다.

제14조제2항 후단 중 “지방의회” 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자치법」 제26조제6항” 을 각각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으로, “지방의회” 를 각각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로 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16조 단서 중 “「지방자치법」 제26조제6항” 을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으로 하고, “지방의회” 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u>사항과 주민의 조례 제정 또는 개폐 청구에 필요한 연서하여야 할 주민수를 정하여 입법과정의 투명성 확보 및 주민 권익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u></p> <p>제9조(작성대상) (생략)</p> <p>①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에 따라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및 재원조달방안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p> <p>② ~ ③ (생략)</p> <p>④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의 청구인은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조례안에 첨부할 수 있다.</p> <p>4. ~ 10. (생략)</p> <p>제12조(사전협의)① ~② (생략)</p> <p>③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의 소관 부서에서는 제9조에 따른 비용추계서 검토 의견서를 작성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p> <p>제4장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p>	<p>제1조(목적) ----- ----- <u>사항을</u>----- ----- -----.</p> <p>제9조(작성대상) (현행과 같음)</p> <p>① ----- 「지방자치법」 제78조 ----- ----- ----- ----- ----- -----.</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lt;삭 제&gt;</p> <p>4. ~ 10. (현행과 같음)</p> <p>제12조(사전협의)① ~② (현행과 같음)</p> <p>&lt;삭 제&gt;</p> <p>&lt;삭 제&gt;</p>

제13조(생략)

제14조(자치법규의 공포 절차)

① (생략)

② 자치법규의 공포문 전문에는 입법의 뜻을 적어 군수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 이 경우 조례 공포문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사실을 적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법」 제26조제6항 후단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공포문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사실과 「지방자치법」 제26조제6항 후단에 따라 공포한다는 사실을 적고, 지방의회의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

제15조(예산 등)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예산의 고시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16조(공포방법 등) 자치법규 등은 군보에 게재하여 공포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26조제6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군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한다.

<삭 제>

제14조(자치법규의 공포 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

③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  
-----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  
-----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

<삭 제>

제16조(공포방법 등) -----  
-----  
-. ---,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  
-----.

## □ 지방자치법

### 제32조(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

-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확정된 조례를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항에 따라 조례가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따라 확정된 조례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포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한다.
- ⑦ 제2항 및 제6항 전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를 공포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6항 후단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이 조례를 공포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78조(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필요한 의안을 제출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그에 따른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른 주민의 조례 제정과 개정·폐지 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고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자)**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청구권자”라 한다)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이하 “지방의회”라 한다)에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할 수 있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제13조(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절차)** ① 지방의회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이 수리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주민청구조례안을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

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② 지방의회는 심사 안건으로 부쳐진 주민청구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의 취지(대표자와의 질의·답변을 포함한다)를 들을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법」 제79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주민청구조례안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을 수리한 당시의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가 끝나더라도 다음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까지는 의결되지 못한 것 때문에 폐기되지 아니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 □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주민조례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교육 및 조례 관련 전문가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대구광역시 달성군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의안번호: 제2419호

2. 제 출 일: 2023년 12월 6일

3. 제 출 자: 달성군수

## 4. 제안사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의 소송수행 변호사 선정·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 권고안에 따른 제도개선 과제를 이행하여 고문변호사 운영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함.

## 5. 주요내용

- 제명 변경
  - 당초 「대구광역시 달성군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 변경 「대구광역시 달성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 위촉 시 공개모집 및 관련기관 추천 방식 도입, 퇴직공직자 위촉 제한 규정 마련(안 제2조제2항, 제3항)
- 전문성 및 유사사건 수행 경험 등을 고려한 직무 편중 방지 규정 신설(안 제3조제3항)
- 고문변호사 운영, 소송수행 현황에 관한 세부 정보 공개(안 제8조)

## 6. 관계법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48조, 제50조

## 7.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의 소송수행 변호사 선정·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의 법률고문 또는 소송수행 변호사 위촉 시 공모방식 도입과 법률고문 및 소송수행 변호사 위촉, 소송대리 관련 세부정보 공개 등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제도개선 과제를 이행하여 고문변호사 운영의 공정성·투명성을 향상시키고, 법률고문변호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 대구광역시 달성군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를 “대구광역시 달성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로 한다.

제1조 중 “법률고문변호사” 를 “고문변호사” 로 한다.

제2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회·대한변호사협회 등 관련 단체의 추천 또는 공개모집 방식으로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 ③ 군에서 근무한 변호사는 퇴직 후 1년 이내에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수 없다.

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군수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률자문 또는 소송수행을 위하여 고문변호사의 전문성, 유사사건 수행 경험, 관할법원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촉한 고문변호사 간에 균등하게 업무를 배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를 제9조로 하고,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정보공개) 군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그 밖에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고문변호사 위촉현황, 소송수행 현황을 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촉된 고문변호사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대구광역시 달성군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과 관련된 법률 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u>법률고문변호사</u>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위촉 등) ① (생략)</p> <p><u>&lt;신 설&gt;</u></p> <p><u>&lt;신 설&gt;</u></p> <p><u>&lt;제2항에서 이동&gt;</u></p> <p><u>&lt;제3항에서 이동&gt;</u></p> <p>제3조(직무) ① ~ ② (생략)</p> <p><u>&lt;신 설&gt;</u></p>	<p><u>대구광역시 달성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u></p> <p>제1조 ----- ----- -----<u>고문 변호사</u>----- -----.</p> <p>제2조(위촉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회·대한변호사협회 등 관련 단체의 추천 또는 공개모집 방식으로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p> <p>③ 군에서 근무한 변호사는 퇴직 후 1년 이내에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수 없다.</p> <p>④ <u>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u></p> <p>⑤ <u>고문변호사가 법률고문에 응하는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할 때,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내라 하더라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u></p> <p>제3조(직무)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u>군수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률</u></p>

<신 설>

<제8조에서 이동>

자문 또는 소송수행을 위하여 고문 변호사의 전문성, 유사사건 수행 경험, 관할법원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촉한 고문변호사 간에 균등하게 업무를 배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정보공개) 군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그 밖에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고문변호사 위촉현황, 소송수행 현황을 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제도개선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 법령 그 밖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48조(의견제출 기회의 부여)** ① 권익위원회는 제46조 또는 제47조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하기 전에 그 행정기관등과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관계 행정기관등의 직원·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권익위원회가 개최하는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50조(처리결과에의 통보 등)** ① 제46조 또는 제47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권익위원회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권익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의안번호: 제2422호

2. 제 출 일: 2023년 12월 6일

3. 제 출 자: 달성군수

## 4. 제안사유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제4항에서 조례로 위임된 지진 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및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을 반영하여 정비하기 위함.

## 5. 주요내용

- 표준조례안에 따른 제명 개정(제명)
- 조례의 근거 법령 명확화(안 제1조)
- 용어 수정(안 제2조~제12조)
  - “긴급 위험도” 를 “위험도” 로 수정
  - “피해 시설물” 을 “피해시설물” 로 수정
  - “달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을 “달성군 지역대책본부의 장” 으로 수정
  - “달성군지역본부장” 을 “달성군 지역대책본부장” 으로 수정

- “지진피해 시설물 긴급 위험도” 를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로 수정
  - “중앙본부장” 을 “중앙대책본부장” 으로 수정
  - “대구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을 “대구광역시 지역대책본부장” 으로 수정
  - “달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를 “달성군 대책본부” 로 수정
-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운영 조문 정비(안 제5조)
    - 시설물별 평가반 운영 조항 신설(제5항)
    - 지역대책본부장과 단체의 업무협약에 대한 조항 신설(제6항)
  - 제7조(위험도 평가 및 현장조치 등)을 삭제(안 제7조)
  - 제7조(위험도 평가단의 기능) 신설(안 제7조)
  - 제9조의 조문을 ‘위험도 평가 지원요청 등’ 으로 변경(안 제9조)
  - 제10조의 조문을 ‘평가단원의 안전을 위한 지원’ 으로 수정(안 제10조)
  - 안 제13조(위험도 평가단원의 관리) 신설
  - 안 제14조(교육·훈련) 신설
  - 안 제15조(위험도 평가단의 활동 등) 신설

## 6. 관계법령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의2

## 7.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제4항에서 조례로 위임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및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제명을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는 등 법령에 맞게 용어를 수정하였으며,
  
- 건축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원의 요건, 건축물 외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원의 요건을 신설하여 자격 조건을 세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제4항에서 위임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긴급 위험도”를 “위험도”로 하고, “피해 시설물”을 “피해시설물”로 하며, 제2조제3호 중 “긴급 위험도”를 “위험도”로 하고, “달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 달성군지역본부장 “이라 한다)”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달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 달성군 대책본부 “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 달성군 지역대책본부장 “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조제4호 중 “지진피해 시설물 긴급 위험도”를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로 한다.

제3조제2항 본문 중 “달성군지역본부장” 을 “달성군 지역대책본부장” 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달성군지역본부장” 을 “달성군 지역대책본부장” 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중앙본부장” 을 “중앙대책본부장” 으로 하며, “대구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을 “대구광역시 지역대책본부장” 으로 한다.

제4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달성군지역본부장” 을 각각 “달성군 지역대책본부장” 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달성군지역본부장” 을 “달성군 지역대책본부장” 으로 하고, “달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를 “달성군 대책본부” 로 한다.

제5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위험도 평가단의 단장(이하 “평가단장” 이라 한다)은 시설물의 안전 관련 업무 또는 지진재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또는 과장 중에서 달성군 지역대책본부장이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 ③ 달성군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역 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할 구역의 원활한 위험도 평가를 위해 필요한 인원의 위험도 평가단원을 구성한다.
- ④ 달성군 지역대책본부장은 제3항에 따른 위험도 평가단원의 구성 시 다음 각 호 각 목의 자격 중 하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위험도 평가단원의 자격

가.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직무 종류 건설의 건축 중 직무 범위가 건축구조인 기술사

나. 「건축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사

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직무분야 건축 중 전문분야가 건축구조인 고급 이상 등급 건설기술인

라. 그 밖에 달성군 지역대책본부장이 건축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2. 건축물 외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위험도 평가단원의 자격

가.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직무종류가 건설 중 토목인 기술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중 직무분야가 토목인 건설기술인으로서 같은 별표 1 제2호 나목에 따른 고급 이상의 등급을 가진 사람

다. 그 밖에 달성군 지역대책본부장이 건축물 외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⑤ 평가단장은 위험도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설물별 평가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물 등 각 시설물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시설물별 평가반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⑥ 달성군 지역대책본부장은 관할 구역의 제4항 각 호 각 목의 자격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된 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위험도 평가단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달성군지역본부장” 을 각각 “달성군 지역대책본부장” 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위험도 평가단의 기능) 달성군 지역대책본부장이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제1항 및 이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구성·운영하는 위험도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관할 구역 내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
2. 관할 구역 외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 지원

제8조제1항 중 “달성군지역본부장” 을 “달성군 지역대책본부장” 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달성군지역본부장” 을 “달성군 지역대책본부장” 으로 하고, “중앙본부장” 을 “중앙대책본부장” 으로 한다.

제8조제4항 중 “달성군지역본부장” 을 “달성군 지역대책본부장” 으로 하고, “피해 시설물” 을 “피해시설물” 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위험도 평가 지원 요청 등)

- ① 달성군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달성군 또는 인근 시·군·구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인력 및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달성군 지역대책본부장은 달성군 및 다른 시·군·구 지역대책본부장으로부터 위험도 평가와 관련된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청에 응하여 위험도 평가를 지원하는 위험도 평가 단원은 지원을 요청한 지역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10조의 제목 “(평가단원 안전 및 피해보상)” 을 “(평가단원의 안전을 위한 지원)”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달성군지역본부장” 을 “달성군 지역대책본부장” 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달성군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관련 업무로 위험도 평가단원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1조 및 제12조 중 “달성군지역본부장” 을 각각 “달성군 지역대책본부

장” 으로 한다.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위험도 평가단원의 관리)

- ① 달성군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단원에게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위험도 평가단원증을 발급해야 한다.
- ② 달성군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단원의 명단 및 비상연락망을 연 1회 이상 현행화 하는 등 정기적으로 위험도 평가단원을 관리해야 한다.

제14조(교육·훈련)

- ① 달성군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위험도 평가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 ② 위험도 평가단원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달성군 지역대책본부장이 실시하는 위험도 평가 관련 교육 등에 참여하거나, 기술인 보수교육에서 위험도 평가 관련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교육·훈련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제15조(위험도 평가단의 활동 등)

- ① 달성군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신속한 위험도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험도 평가 대상 및 기간 등을 포함한 위험도 평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의 피해상황 및 주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학교

2.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 ② 평가단장은 원활한 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달성군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위험도 평가 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달성군 지역대책본부장은 피해상황 및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위험도 평가단원은 달성군 지역대책본부장이 수립한 위험도 평가 계획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 할 경우 제13조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위험도 평가단원증을 지참해야 한다.

④ 달성군 지역대책본부장은 현장조사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위험도 평가단에 알려야 한다.

1. 위험도 평가 대상 지역 및 시설물 현황
2. 지역 및 시설물 피해 상황
3. 화재 발생 상황, 치안 유지 상황 등 현지 상황
4. 그 밖에 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

⑤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평가결과를 3등급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의 표지를 피해시설물의 잘 보이는 위치에 부착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위험 표지
2.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제한 표지
3.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가능 표지

⑥ 달성군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결과가 위험 또는 사용제한 등급인 경우 피해시설물의 잘 보이는 위치에 별지 제6호서식을 부착하거나 표지 부착이 곤란한 시설물에는 출입 차단시설 또는 안전선을 설치하고 시설물의 사용과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⑦ 그 외 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대구광역시 달성군 <u>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지진에 의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생략)</li> <li>2. “지진 피해시설물 <u>긴급 위험도 평가</u>” (이하 “<u>위험도 평가</u>” 라 한다)는 지진재해 발생시 <u>피해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피해시설물의 상태를 신속히 평가하여 위험 정도를 표시하는 것 등을 말한다.</u></li> <li>3. “지진 피해시설물 <u>긴급 위험도 평가단</u>” (이하 “<u>위험도 평가단</u>” 이라 한다)은 위험도 평가를 위해 <u>달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달성군지역본부장” 이라 한다)이</u>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한 평가단을 말한</li> </ol>	<p>대구광역시 달성군 <u>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지진·화산재해대책법</u>」 제21조제4항에서 위임된 <u>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현행과 같음)</li> <li>2. “지진 피해시설물 <u>위험도 평가</u>” (이하 “<u>위험도 평가</u>” 라 한다)는 지진재해 발생시 <u>피해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피해시설물의 상태를 신속히 평가하여 위험 정도를 표시하는 것 등을 말한다.</u></li> <li>3. “지진 피해시설물 <u>위험도 평가단</u>” (이하 “<u>위험도 평가단</u>” 이라 한다)은 위험도 평가를 위해 「<u>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u>」 제16조에 따른 <u>달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달성군 대책본부” 라 한다)의 본부장</u></li> </ol>

다.

4. “지진피해 시설물 긴급 위험도 평가단원” (이하 “위험도 평가단원” 이라 한다)은 건축·토목 등 관련분야 전문가로 달성군 및 인근지역 거주자 중 위험도 평가단으로 등록하고 제2호의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 ① (생략)
- ② 달성군 관할구역 내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는 달성군지역본부장이 실시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한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는 해당 시설물 관리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험도 평가의 실시를 요청받은 시설물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제4조(위험도 평가 실시 여부 판단 등)

- ① 달성군지역본부장은 다음의 경우에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다.
  1. (생략)
  2. (생략)
  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이하 “중앙본부장” 이라 한다)또는 대구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위험도 평가 실시를 요구한 경우

(이하 “달성군 지역대책본부장 “이라 한다)이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말한다.

4.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 (이하 “위험도 평가단원” 이라 한다)은 건축·토목 등 관련분야 전문가로 달성군 및 인근지역 거주자 중 위험도 평가단으로 등록하고 제2호의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 ① (현행과 같음)
- ② 달성군 관할구역 내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는 달성군 지역대책본부장이 실시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한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는 해당 시설물 관리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험도 평가의 실시를 요청받은 시설물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제4조(위험도 평가 실시 여부 판단 등)

- ① 달성군 지역대책본부장은 다음의 경우에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다.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이하 “중앙대책본부장” 이라 한다)또는 대구광역시 지역대책본부장이 위험도 평가 실시를 요구한 경우

② 달성군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실시를 결정한 경우 피해지역 주민 등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③ 달성군지역본부장은 지진에 대비하여 사전에 위험도 평가를 위한 체제를 정비하고, 위험도 평가단원 등록·관리 및 필요한 기자재 등을 비축하여야 한다.

제5조(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 등)

① 달성군지역본부장은 지진에 의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하여 위험도 평가를 결정한 경우, 지체없이 달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험도 평가단의 단장(이하 “평가단장”이라 한다)은 달성군 건설도시국장으로 한다.

③ 위험도 평가단에는 지역별 또는 시설물별로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반을 둘 수 있고, 평가반의 수는 피해지역의 범위, 피해시설의 종류 및 피해규모에 따라 달성군지역본부장이 정한다. 이 경우 평가반의 반장은 관련분야 전문가로 한다.

④ 달성군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실시에 대비하여 다음 각호의 전문가를 위험도 평가단원으로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달성군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실시를 결정한 경우 피해지역 주민 등에게 그 사실을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

③ 달성군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진에 대비하여 사전에 위험도 평가를 위한 체제를 정비하고, 위험도 평가단원 등록·관리 및 필요한 기자재 등을 비축하여야 한다.

제5조(위험도 평가단의 구성·운영 등)

① 달성군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진에 의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하여 위험도 평가를 결정한 경우, 지체없이 달성군 대책본부에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험도 평가단의 단장(이하 “평가단장”이라 한다)은 시설물의 안전 관련 업무 또는 지진재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또는 과장 중에서 달성군 지역대책본부장이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달성군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역 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할 구역의 원활한 위험도 평가를 위해 필요한 인원의 위험도 평가단원을 구성한다.

④ 달성군 지역대책본부장은 제3항에 따른 위험도 평가단원의 구성 시 다음 각 호 각 목의 자격 중 하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한 건축, 토목, 안전관리(건설안전) 직무분야 고급기술자 이상(개정 2018. 7. 20.)
2.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및 건축사보
3. 달성군지역본부장이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자
- ⑤ 위험도 평가단원의 등록(말소)신청서 및 평가단원증은 각각 별지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4.7.10)
- ⑥ 달성군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단원을 대상으로 연1회 이상 위험도 평가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구광역시 지역본부장이 달성군 위험도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세미나 또는 워크숍을 개최하는 경우 달성군지역본부장이 교육·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건축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위험도 평가단원의 자격
  - 가.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직무 종류 건설의 건축 중 직무범위가 건축구조인 기술사
  - 나. 「건축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사
  - 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직무분야 건축 중 전문분야가 건축구조인 고급 이상 등급 건설기술인
  - 라. 그 밖에 달성군 지역대책본부장이 건축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2. 건축물 외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위험도 평가단원의 자격
  - 가.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직무종류가 건설 중 토목인 기술사
  -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중 직무분야가 토목인 건설기술인으로서 같은 별표 1 제2호 나목에 따른 고급 이상의 등급을 가진 사람
  - 다. 그 밖에 달성군 지역대책본부장이 건축물 외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 ⑤ 평가단장은 위험도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설물별 평가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물

제6조(위험도 평가 시기) ① 달성군 지역본부장은 2차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위험도 평가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험도 평가 시기 및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 평가단장은 피해규모 및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위험도 평가 기간을 달성군 지역본부장의 승인을 득한 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위험도 평가 및 현장조치 등)

① 달성군지역본부장은 피해시설물 위험도를 평가함에 있어 다음의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여야 한다.

1. 위험도평가 대상지역
2. 시설물별 피해 상황
3. 화재 발생 상황
4. 치안유지 및 폭동 발생 여부
5. 기타 위험도 평가시 필요한 사항 등

② 달성군지역본부장은 피해시설물의 중요도에 따라 위험도 평가 우선 순위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 및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등 각 시설물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시설물별 평가반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⑥ 달성군 지역대책본부장은 관할 구역의 제4항 각 호 각 목의 자격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된 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위험도 평가단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위험도 평가 시기) ① 달성군 지역대책본부장은 2차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위험도 평가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험도 평가 시기 및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 평가단장은 피해규모 및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위험도 평가 기간을 달성군 지역대책본부장의 승인을 득한 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위험도 평가단의 기능) 달성군

지역대책본부장이 「지진·화산재해 대책법」 제21조제1항 및 이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구성·운영하는 위험도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관할 구역 내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
2. 관할 구역 외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 지원

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다중 이용시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8. 7. 20.)

③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평가결과를 3등급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의 표지를 피해 시설물의 잘 보이는 위치에 부착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 서식의 위험 표지
2. 별지 제4호 서식의 사용제한 표지
3. 별지 제5호 서식의 사용가능 표지

④ 달성군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결과가 위험 또는 사용제한 등급인 경우 피해 시설물의 잘 보이는 위치에 별지 제6호 서식을 부착하거나 표지 부착이 곤란한 시설물에는 출입 차단시설 또는 안전선을 설치하고 시설물의 사용과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제8조(위험도 평가 결과 보고서 제출 등)

- ① 평가단장은 현장조사를 통한 위험도 평가 완료 후 15일 이내에 위험도평가 결과 보고서를 달성군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평가단장은 3개월 이내에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고, 위험도 평가 활동과 관련된 보고서, 사진 등 각종 결과물 일체를 달성군지역본부장을

제8조(위험도 평가 결과 보고서 제출 등)

- ① 평가단장은 현장조사를 통한 위험도 평가 완료 후 15일 이내에 위험도평가 결과 보고서를 달성군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평가단장은 3개월 이내에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고, 위험도 평가 활동과 관련된 보고서, 사진 등 각종 결과물 일체를 달성군 지역대책본부장을 경우

경유하여 중앙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달성군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단 최종 보고서와 피해 시설물 후속 조치 계획 등을 검토하여 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제9조(타 지자체 지원 및 지원요청 등)

① 달성군지역본부장은 신속한 위험도 평가의 실시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및 인근 자치단체 지역본부장에게 필요한 기자재 및 인원 등을 지원 요청할 수 있다.

② 달성군지역본부장은 대구광역시 및 타 자치단체 지역본부장으로부터 위험도 평가와 관련된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지원을 요청한 달성군지역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위험도 평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0조(평가단원 안전 및 피해 보상)

① 달성군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시 위험도 평가단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험도 평가 활동으로 평가단원이 사망 또는 부상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하여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달성군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단 최종 보고서와 피해시설물 후속 조치 계획 등을 검토하여 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제9조(위험도 평가 지원 요청 등)

① 달성군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달성군 또는 인근 시·군·구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인력 및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달성군 지역대책본부장은 달성군 및 다른 시·군·구 지역대책본부장 으로부터 위험도 평가와 관련된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청에 응하여 위험도 평가를 지원하는 위험도 평가 단원은 지원을 요청한 지역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10조(평가단원의 안전을 위한 지원)

① 달성군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시 위험도 평가단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달성군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관련 업무로 위험도 평가단원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제11조(경비지원) 달성군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위험도 평가단원에게 평가활동 등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 차량 임차비, 보고서 작성비 등 제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운영, 위험도 평가 세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달성군 지역본부장이 정한다.

<신 설>

<신 설>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1조(경비지원) 달성군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위험도 평가단원에게 평가활동 등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 차량 임차비, 보고서 작성비 등 제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운영, 위험도 평가 세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달성군 지역대책본부장이 정한다.

제13조(위험도 평가단원의 관리)

① 달성군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단원에게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위험도 평가단원증을 발급해야 한다.

② 달성군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단원의 명단 및 비상연락망을 연 1회 이상 현행화 하는 등 정기적으로 위험도 평가단원을 관리해야 한다.

제14조(교육·훈련)

① 달성군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위험도 평가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② 위험도 평가단원이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달성군 지역대책본부장이 실시하는

<신 설>

위험도 평가 관련 교육 등에 참여하거나, 기술인 보수교육에서 위험도 평가 관련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교육·훈련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제15조(위험도 평가단의 활동 등)

① 달성군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신속한 위험도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험도 평가 대상 및 기간 등을 포함한 위험도 평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의 피해상황 및 주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학교

2.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② 평가단장은 원활한 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달성군 지역 대책본부장에게 위험도 평가 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달성군 지역대책본부장은 피해상황 및 현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위험도 평가단원은 달성군 지역대책 본부장이 수립한 위험도 평가 계획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 할 경우 제13조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위험도 평가 단원증을 지참해야 한다.

④ 달성군 지역대책본부장은 현장조사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위험도 평가단에 알려야 한다.

1. 위험도 평가 대상 지역 및 시설물 현황
2. 지역 및 시설물 피해 상황
3. 화재 발생 상황, 치안 유지 상황  
등 현지 상황

4. 그 밖에 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

⑤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평가결과를 3등급으로 구분  
하고, 다음 각 호의 표지를 피해시설물의  
잘 보이는 위치에 부착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위험 표지
2.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제한 표지
3.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가능 표지

⑥ 달성군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결과가 위험 또는 사용제한  
등급인 경우 피해시설물의 잘 보이는  
위치에 별지 제6호서식을 부착하거나  
표지 부착이 곤란한 시설물에는 출입  
차단시설 또는 안전선을 설치하고 시설물의  
사용과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⑦ 그 외 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지진·화산재해대책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다.

##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사용가능 여부 등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② 제1항에 따라 신속한 위험도 평가를 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을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가 부족한 경우 인근 시·도 또는 시·군·구 거주자를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③ 위험도 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 12. 3.>

④ 제2항에 따른 지역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9. 12. 3.>

##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의2(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및 시·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지역 상황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의 대상·기간 등을 포함한 위험도 평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대상 시설물의 관리자·소유자 또는 점유자(이하 “관리자등”이라 한다)에게 위험도 평가의 목적·일시 등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피해 상황 등을 고려하여 긴급하게 위험도 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구두(口頭)로 통지하거나 사전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지역대책본부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현장 조사를 통해 대상 시설물의 사용가능 여부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용 시 주의사항과 함께 시설물 관리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④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시설물의 평가 일시 및 결과 등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험도 평가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시·도지사등의 의견을 들어 지침을 마련하고 시·도지사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5. 26.]

# 대구광역시 달성군 치수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1. 의안번호: 제2423호

2. 제 출 일: 2023년 12월 6일

3. 제 출 자: 달성군수

## 4. 제안사유

- 하천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하천관리에 환원 투자하고자 설치된 특별회계였으나, 직영 골재채취장 폐지 후 현재 별다른 수익금이 발생되지 않고 여건변화의 가능성이 없어 치수사업특별회계의 존속 필요성이 상실되어 금년도 기간 만료되는 조례를 연장하지 않고 폐지하고자 함.

## 5. 주요내용

- 대구광역시 달성군 치수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 6.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 7. 검토의견

- 본 폐지조례안과 관련하여 「하천법」 제66조 및 동법 시행령 77조에 따라 하천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은 하천 유지·보수 비용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됨에 따라 골재채취에 따른 수입금은 하천유지비로 사용하되, 이를 별도의 특별회계로 운영해야 한다는 법적조항은 없습니다.

반드시 특별회계를 설치하지 않아도 일반회계에서 하천수입금 관리가 가능하며 골재채취장 운영시 그 비용이 많음에 따라 수입금의 원활한 관리 및 일반회계와 분리 관리를 위해 설치한 특별회계일뿐 필수 조항이 아닙니다.

- 특별회계를 존속해야 하는 별다른 이유가 없는 현시점에서는 먼저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향후 골재채취 수입원의 발생 가능성이 있을 시 수요조사, 골재매장량 확인, 시설투자비 대비 수익성검토, 관련 정부 시책에 따른 인허가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특별회계를 설치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본 조례의 폐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붙임 1. 조례안 1부. 끝.

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제 호

## 대구광역시 달성군 치수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치수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천내리 도시재생시설 ‘나들이’ 관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1. 의안번호: 제2424호

2. 제 출 일: 2023년 12월 6일

3. 제 출 자: 달성군수

## 4. 제안사유

- 화원 천내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거점시설 운영을 위해 추진해 온 ‘화원천내리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가 완료됨에 따라 위 조합에 실버 커뮤니티 공간 ‘나들이’ 를 관리위탁하여 주민복지, 도시재생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도새재생사업의 성공적인 운영 발판을 도모하고자 함.

## 5. 주요내용

- 위탁대상 현황

시 설 명	소 재 지	시 설 규 모	종사자수	비 고
실버 커뮤니티 ‘나들이’	달성군 화원읍 천내리 851	· 1층 : 공동현관 · 2층 : 실버카페 · 3층 : 학습실, 공유공간 · 4층 : 체력단련실, 동아리실 등 (연면적 595.3㎡)	7명 (조합원수)	

○ 위탁대상 사무의 범위 및 내용

: 천내리 도시재생시설 실버 커뮤니티 공간 ‘나들이’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조직 및 구성

구 분	계	임 원		비 고
		이 사	감 사	
인 원	7	6	1	

※ 수탁자 : 화원천내리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p>◆ 협동조합 개요 ◆</p> <p>○ 조 합 명 : 화원천내리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p> <p>○ 이사장명 : 서 혜 경</p> <p>○ 주 소 :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 522길 75</p> <p>○ 설립인가일 : 2023. 8. 22. 국토교통부 인가</p>
--

○ 위탁기간: 3년(2024. 1. 1. ~ 2026. 12. 31.)

○ 수탁기관 선정방식

- 수의계약

☞ 근 거 :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의2(공동이용시설의 관리위탁) 제2항 제1호

: 해당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도시재생 주민협의체·마을 관리협동조합 등 도시재생 마을공동체에 위탁하는 경우

○ 민간위탁 추진일정(그간 추진일정)

- 2023. 2. : 화원천내리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국토부 인가 신청
- 2023. 8. : 화원천내리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국토부 인가
- 2023. 9. : 화원천내리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법인 등기
- 2023.10. : 마을조합의 ‘나들이’ 무상사용허가 공유재산심의 의결

○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별도 첨부

○ 향후일정

- 2023. 11. : 천내리마을조합의 ‘나들이’ 관리위탁 의회 동의
- 2023. 12. : 화원천내리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사업자등록  
(실버 카페운영)
- 2023. 12. : 위·수탁 계약
- 2021. 1.~ : 운영

○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연 22,500천원 (균 22,500)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내 용
운 영 비	22,500	· 나들이 운영 관리용품 2,400 · 나들이 공공운영비 20,100

## 6. 관계법령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 30조의2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
-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 7.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도시재생사업으로 공급된 생활 인프라 시설 실버 커뮤니티 “나들이”의 운영에 있어, 사업의 종료 이후에도 주민이 직접 변화를 체감하고 실천하여 지속적인 주민주도형 지역재생을 도모하는 도시재생사업의 취지에 부합하고자, 천내리 마을주민들로 구성된 ‘화원천내리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에 그 운영 및 관리사무를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수익계약 방식으로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것으로
- 위치는 화원읍 천내리 851번지이며, 규모는 지상 1층 ~ 4층, 연면적 595.3㎡로, 주요시설로는 카페, 평생교육학습실, 체력단련실, 공유작업공간 등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4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로 본 도시재생시설 ‘나들이’ 관리위탁(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붙임 관계법령 1부. 끝.

##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2(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재생 활성화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 내에서 제2조제10호나목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2. 도시재생 인정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른 공익 목적의 기준, 사용료 면제 대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 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 1. 20.>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5. 1. 20.>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신설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20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

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2022. 11. 15.>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료를 관리위탁받은 행정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수익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①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익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7. 7. 26.>

1.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5에 따라 수익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 □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공동이용시설) 이 조례에서의 공동이용시설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각 호에 따른 시설을 말하고, 영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방범시설 등 주민 안전 및 공동 관리에 관한 시설

2. 운동시설, 체력단련시설, 편의시설, 휴게시설 등 주민 복지 증진 시설
3. 공연시설, 전시시설, 문화창작소, 독서실, 작은 도서관 등 문화 · 여가시설
4. 쓰레기 · 재활용품 수거 및 처리시설 등 환경개선 시설
5. 공동작업장, 공동판매장, 공동회의실 등 공동 활용 시설
6. 마을 카페 등 도시재생구역의 경제 및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
7.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건립된 시설 중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해 대구광역시 달성군수가 인정하는 시설

**제3조의2(공동이용시설의 관리위탁)**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는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하여 조성된 공동이용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그 시설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을 관리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법인·단체 등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1. 해당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 마을관리협동조합 등 도시재생 마을공동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2.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법인·단체 등으로서 군수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③ 군수는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해 다른 법인·단체 등에 우선하여 제3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법인·단체 등에게 공동이용시설을 관리위탁, 사용·수익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위탁료, 사용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매년 위탁료를 산출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민간위탁 적정성 사전 검토서

## 1 기본 검토사항

대상사무	○ 천내리 도시재생시설 ‘나들이’ 마을조합 관리위탁
민간위탁 추진목적	○ 도시재생 사업종료 후 도시재생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주민 주도의 지역재생 추진 역량 강화 ○ 도시재생사업으로 공급되는 기초 생활인프라(공동이용시설)를 운영·관리할 수 있는 주민 중심의 자조조직 육성
위탁근거	○ 법적 근거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2 -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의3 ○ 상급기관 지침 및 자체 방침서 기재 - ‘화원천내리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실버 커뮤니티 「나들이」 관리위탁 운영계획
위탁내용	○ 추진경위 - 2022.12. :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 2023. 2. : 화원천내리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국토부 인가 신청 - 2023. 8. : 화원천내리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국토부 인가 - 2023. 9. : 화원천내리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법인 등기 - 2023. 9. : 마을조합의 ‘나들이’ 관리위탁 방침 수립 - 2023.10. : 마을조합의 ‘나들이’ 무상사용허가 공유재산심의 의결 ○ 위탁기간: 3년 (2024. 1. 1. ~ 2026. 12. 31.) ○ 위탁내용 - 실버 커뮤니티 공간 ‘나들이’ 운영 및 관리

적 정 성  
점 토

-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도시재생특별법」 및 「도시재생사업 가이드라인」, 도시재  
생 군 조례에 도시재생사업으로 공급된 공동이용시설(거점시설,  
주차장, 주민공동공간 등)은 지역사회 주민협의체 등 주민자생  
조직으로 하여금 운영하도록 권장하고 있음
  -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의 설립 취지는 지역사회 현안에 대  
해 가장 잘 아는 주체는 주민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하므로, 마  
울조합에 수의계약을 통한 관리위탁 방식이 적정
-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 신생 설립 마을조합의 초창기 사업에 대한 지원과 육성으로 도  
시재생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기반 마련 및 주  
민제안공모사업 추진 등을 통해 양질의 서비스를 공급
- 경제적 효율성
  - 대상자가 지역사회 주민인 점과 진행사업이 공공을 위한 사업  
인 점을 고려하여 주민행복지수 증진 및 만족감 증대에 초점을  
맞추되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독려와 지원 필요
-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군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지역사회 사회적경제기업 등과의 협력  
을 통해 질 높은 서비스 제공 가능
  - 주민참여도시학교, 마을관리협사회적협동조합 교육 등을 통한  
역량 강화, 지식 함양을 통해 숙련된 기술 및 운영방안 전파  
예정
- 성과 측정의 용이성
  - 물리, 경제,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 성과목표화를 추진하여  
지역조사 진행 및 주민 인터뷰 등을 토대로 검토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을조합 운영에 따른 결산내역 등 운영관련 사항을 공개하여 조합원 및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투명한 경영 공개가 되도록 법적으로 공개가 의무화 되어 회계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 경영공시 하도록 되어 있음</li> </ul> </li>   <li>○ 위탁사무 책임과 명의를 수탁기관으로 하는 것의 적정성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재생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 육성 및 공공지원 가이드라인」(국토교통부, '22. 5.) 에 따라 주민주도의 도시재생사업의 지속적인 선순환 피드백을 위해 적극권장하고 있고, 이에 주민과, 천내리 도시재생현장센터, 관할 부서에서는 마을조합 설립을 위한 작업을 준비해 왔음</li> </ul> </li>   <li>○ 공익성(공공성)이 강해 민간위탁이 제한 되는지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무인지 여부..(부)</li> <li>- 공신력이 요구되는 사무인지 여부..... (부)</li> <li>- 상시·지속적 사무인지 여부.....(여)</li> </ul> </li> </ul>
<p>기존 수탁 기관 및 선정 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없음</li> </ul>
<p>수탁 기관 선정 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정방법 : 수의계약</li> <li>○ 수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합명 : 화원천내리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li> <li>- 이사장명 : 서혜경</li> <li>-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 522길 75</li> <li>- 구성 : 이사 6, 감사 1</li> </ul> </li> </ul>

<p>민 간 위 탁 금 *예산지원형 위탁시 기재</p>	<p>○ 신규위탁 : 연간 지원 운영비 예상액 ( 22,500천원)</p> <table border="1" data-bbox="383 347 1380 683"> <thead> <tr> <th>연도별</th> <th>지원운영비(천원)</th> <th>세부 산출내역</th> </tr> </thead> <tbody> <tr> <td>2024년</td> <td>22,500</td> <td>· 나들이 운영 관리용품 2,400 · 나들이 공공운영비 20,100</td> </tr> <tr> <td>2025년</td> <td>22,500</td> <td>· 나들이 운영 관리용품 2,400 · 나들이 공공운영비 20,100</td> </tr> <tr> <td>2026년</td> <td>22,500</td> <td>· 나들이 운영 관리용품 2,400 · 나들이 공공운영비 20,100</td> </tr> </tbody> </table> <p>※ 천내리마을관리조합에 ‘나들이’ 운영 관리위탁에 대한 민간위탁금은 지원하지 않고 마을조합 설립 초창기에 따른 최소한의 ‘나들이’ 건물 운영비만 지원.</p> <p>- 추후 실버 카페 운영에 따른 커피, 음료, 제과 등 상품개발 등을 통해 지속적인 수익창출을 위한 자생적 노력 필요</p>	연도별	지원운영비(천원)	세부 산출내역	2024년	22,500	· 나들이 운영 관리용품 2,400 · 나들이 공공운영비 20,100	2025년	22,500	· 나들이 운영 관리용품 2,400 · 나들이 공공운영비 20,100	2026년	22,500	· 나들이 운영 관리용품 2,400 · 나들이 공공운영비 20,100
연도별	지원운영비(천원)	세부 산출내역											
2024년	22,500	· 나들이 운영 관리용품 2,400 · 나들이 공공운영비 20,100											
2025년	22,500	· 나들이 운영 관리용품 2,400 · 나들이 공공운영비 20,100											
2026년	22,500	· 나들이 운영 관리용품 2,400 · 나들이 공공운영비 20,100											
<p>사 용 료 *수익창출형 위탁시 기재</p>	<p>○ 신규 위탁 : 연간 사용료 수입 예상액( 10,000 천원)</p> <table border="1" data-bbox="351 1131 1356 1400"> <thead> <tr> <th>연도별</th> <th>사 용 료(천원)</th> </tr> </thead> <tbody> <tr> <td>2024년</td> <td>실버 카페 운영 수입 10,000</td> </tr> <tr> <td>2025년</td> <td>실버 카페 운영 수입 10,000</td> </tr> <tr> <td>2026년</td> <td>실버 카페 운영 수입 10,000</td> </tr> </tbody> </table> <p>※ 2층 실버 카페 운영으로 연간 10,000천정도 수입이 예상되나, 이는 카페 운영 인건비 및 ‘나들이’ 운영보조, 주민의 교육, 복지, 여가 등 지역사회 주민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삶의질 향상을 위해 사용할 수 있음.</p>	연도별	사 용 료(천원)	2024년	실버 카페 운영 수입 10,000	2025년	실버 카페 운영 수입 10,000	2026년	실버 카페 운영 수입 10,000				
연도별	사 용 료(천원)												
2024년	실버 카페 운영 수입 10,000												
2025년	실버 카페 운영 수입 10,000												
2026년	실버 카페 운영 수입 10,000												
<p>기대효과 및 향 후 계 획</p>	<p>○ 실버카페 및 휴게공간 마련으로 지역 어르신들의 공동체 활성화</p> <p>○ 지역 노인인재 양성 및 노인 참여형 자생적 조직의 활동거점 마련</p>												
<p>전 문 가 의 견</p>	<p>○ 고령화시대 고령인구의 건강관리 및 커뮤니티를 위한 거점 공간과 재취업을 위한 교육 실행 필요</p>												

## ② 시설위탁 시 작성

시설개요	시설명	실버 커뮤니티 공간 ‘나들이’		
	소재지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 522길 75 (천내리 851)		
	시설규모	1층~4층(연면적 595.3㎡)		
	시설용도	고령인구의 평생교육 및 커뮤니티 활성화 공간		
	준공일자	2023. 5. 3.	개원일자	2024. 1. 예정
	이용대상	천내리(달성군) 주민	수용인원	70명 정도
	보유장비	카페운영 비품, 체력단련 운동기구, 강의실 등		
위치도				
지역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구교도소의 장기간 입지로 인해 인구, 사업체 등 지역 쇠퇴 현상 지속</li> <li>○ 문화시설, 공원, 주차장 등의 주민 편의시설 부족</li> <li>○ 옥포 택지개발지구, 현풍·유가 테크노폴리스, 구지 국가산업단지 등 주변지역의 성장에 비해 정체</li> </ul>			

현  
장  
사  
진



‘나들이’ 전경



(2층) 실버 카페



(3층) 평생교육학습실



(4층) 체력단련실

# 2023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1. 의안번호: 제2425호

2. 제 출 일: 2023년 12월 6일

3. 제 출 자: 달성군수

## 4. 제안사유

-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군의회에 보고 하고자 함.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 5. 주요내용

- 2021년 군의회 제292회 정례회에서 장기미집행시설을 보고한 후 2년이 될 때까지 해제(집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 총 44개소
- 2024년 이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 도시계획시설 현황

○ 달성군 내 전체 도시계획시설(달성군 소관) 3,018개소 중 미집행 시설은 252개소 0.8km<sup>2</sup>이며, 장기미집행 시설은 235개소 0.7km<sup>2</sup>임.

(2023. 10. 31. 기준)

시설 구분	시설 세분	전체		집행		미집행 시설						집행율 (%)
						미집행 전체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장기미집행)		
		건수	면적 (㎡)	건수	면적 (㎡)	건수	면적 (㎡)	건수	면적 (㎡)	건수	면적 (㎡)	
합	계	3,018	15,677,372	2,766	14,843,591	252	833,781	17	131,404	235	702,377	91.7
도	로	2,295	5,663,268	2,106	5,346,164	189	317,104	14	82,088	175	235,016	91.8
	중로	322	2,383,649	319	2,357,809	3	25,840	1	15,497	2	10,343	99.1
	소로	1,973	3,279,619	1,787	2,988,355	186	291,264	13	66,591	173	224,673	90.6
주차장	노외주차장	101	184,561	71	168,100	30	16,461	-	-	30	16,461	70.3
궤	도	1	46,636	-	-	1	46,636	1	46,636	-	-	-
광	장	1	19,640	1	19,640	-	-	-	-	-	-	100.0
공	원	92	219,540	73	155,928	19	63,612	-	-	19	63,612	79.3
	어린이공원	67	146,364	62	138,414	5	7,950	-	-	5	7,950	92.5
	소공원	22	16,968	10	8,126	12	8,842	-	-	12	8,842	45.5
	문화공원	3	56,208	1	9,388	2	46,820	-	-	2	46,820	33.3
녹	지	190	1,795,682	178	1,737,439	12	58,243	2	2,680	10	55,563	93.7
	완충녹지	134	1,565,619	122	1,507,376	12	58,243	2	2,680	10	55,563	91.0
	경관녹지	46	139,283	46	139,283	-	-	-	-	-	-	100.0
	연결녹지	10	90,780	10	90,780	-	-	-	-	-	-	100.0
공공공지	공공공지	88	231,096	88	231,096	-	-	-	-	-	-	100.0
연구시설	연구시설	5	1,440,743	4	1,109,018	1	331,725	-	-	1	331,725	80.0
기타시설	기타시설	245	6,076,206	245	6,076,206	-	-	-	-	-	-	100.0

□ 군의회 보고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2023. 10. 31. 기준)

구 분	시설구분	시설세분	시설수	미집행면적(㎡)	비 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총 계		44	89,730	
	도 로	합 계	40	42,335	
		중 로	1	7,911	논공읍 1개소 화원읍 1개소 논공읍 2개소
		소 로	39	34,424	다사읍 9개소 옥포읍 6개소 가창면 11개소 하빈면 10개소
	주차장	노외주차장	1	213	안박실주차장(가창)
	공 원	합 계	3	47,182	
		소공원	1	362	안박실공원(가창)
문화공원		2	46,820	도동공원(구지) 굿발골공원(유가)	

○ 2024년 이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252개소(군비 251, 국·시비 1)

※ 연구시설(DGIST)은 국·시비 사업

(단위 : 천㎡, 억 원)

구분	시설구분	합 계			2024년 ~ 2026년 (1단계)			2027년 ~ 2029년 이후 (2단계)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총 계		252	834	5,481	194	246	933	58	588	4,548
군비	소 계	251	502	1,718	194	246	933	57	256	785
	도 로	189	317	1,143	138	203	760	51	114	383
	케 도	1	47	301	-	-	-	1	47	301
	주 차 장	30	16	75	30	16	75	-	-	-
	공 원	19	64	113	17	17	63	2	47	50
	녹 지	12	58	86	9	10	35	3	48	51
국·시비	연구시설	1	332	3,763	-	-	-	1	332	3,763

## 6. 관계법령 등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

## 7. 검토의견

- 본 의견청취의 건의 제안사유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입니다
- 달성군 내 전체 도시계획시설(달성군 소관) 3,018개소 중 미집행시설은 252개소 0.8km<sup>2</sup>이며, 장기미집행 시설은 235개소 0.7km<sup>2</sup>입니다. 2022년 12월 제301회 정례회에서 보고한 장기미집행시설 191개소를 제외하고, 2021년 제292회 정례회에서 장기미집행시설을 보고한 후 2년이 될 때까지 해제(집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40개소, 주차장 1개소, 공원 3개소로 총 44개소입니다.
- 2024년 이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으로 제1단계(2024년 ~ 2026년) 사업은 도로 138개소 등 194개소에 대하여, 제2단계(2027년 ~ 2029년 이후) 사업은 도로 51개소 등 58개소에 대하여 집행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본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 참고 - 제301회 제2차 정례회 군의회 보고(2022.12.9.)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2022.12.31. 기준)

구 분	시설구분	시설세분	시설수	미집행면적(㎡)	비 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총 계		191	576,813	
2020년 보고한 시설 중 2년이 지난 시설	도 로	합 계	136	157,268	
		중로	1	1,243	하빈면 1개소
		소로	135	156,025	화원읍 13개소 논공읍 1개소 다사읍 21개소 옥포읍 22개소 현풍읍 1개소 가창면 57개소 하빈면 20개소
	주차장	노외주차장	28	15,827	
	공 원	합 계	16	16,430	
		소공원	11	8,480	
		어린이공원	5	7,950	
	녹 지	완충녹지	10	55,563	
	연구시설	연구시설	1	331,725	

#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의안번호: 제2426호

2. 제 출 일: 2023년 12월 6일

3. 제 출 자: 달성군수

## 4. 제안사유

- 신설된 「달성테크노스포츠센터」의 사용료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상위법령과 규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공공체육시설 사용의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고 관리 강화를 통해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 5. 주요내용

- 체육시설의 용어 정의를 새롭게 규정(안 제2조), 공공체육시설 명칭과 위치를 추가 및 정비(안 별표 1)
-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과제 반영 및 사용료 정리
- 대구광역시 달성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달성군이 설립한 시설관리공단을 체육시설 위탁 관리 대상으로 추가(안 제24조)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일부 용어 정비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

## 6. 관계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7.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신설된 「달성테크노스포츠센터」의 사용료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과제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먼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국민생활 속 반칙·특권 해소를 위한 공공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 제고방안」(2019.10.21.의결)에 따라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공정한 사용기준을 마련하여 지역주민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도록 단체와 일반주민의 경기연습은 동일한 순위로 사용허가(안 제5조제6호)하도록 명시하였으며,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공공체육시설 특정 단체 홍보물 설치 금지 조항을 추가(안 제18조제1항) 하였고,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공공시설 사용 위약금 부담 경감 방안(체육·관광·휴양분야)」(2020.6.8.의결)에 따라 면책 기준을 구체화하여 분쟁을 방지하고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일방 귀책 이외의 여러 불가항력 사항 시 위약금 면제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에 인정범위를 확대 및 구체화 (안 제15조제1항제1호에서제3호, 제5호)하고, 체육시설 관리운영자의 귀책으로 사용 취소한 경우 사용료 반환 기준을 마련하는 등 이용자 중심의 환불 기준을 마련 (안 제15조제1항제7호, 안 제15조제4항)하였습니다.

- 아울러, 달성테크노스포츠클럽센터 전용사용료의 상한액과 사용료 상한액 추가(안 별표 2, 안 별표 3)하고, 「대구광역시 달성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 및 다자녀 가정(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미성년자 1인 이상 포함된 2자녀 이상 가정) 등의 사용료 감면 내용을 포함한 별표 5의 사용료의 감면사항을 신설하여 공공체육시설 사용 기준을 마련, 달성군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달성군 체육시설의 투명하고 공정한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제11호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텔레비전”을 “텔레비전”으로 한다.

1. “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라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로서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운영하는 것을 말하며, 그 중 “부대시설”이란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11. “군인”이란 「군인사법」에 따른 하사 이하의 군인 및 「병역법」에 따른 대체복무요원·사회복무요원을 말한다.

14.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7호에 따라 같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의 모임을 말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허가신청을 할 때 전용으로 사용하려는 사람은 그 사용내역 등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의하여”를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주관하는”을 “주최하거나 주관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경기연습·개인연습·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다만, 경기연습은 직장이나 체육동호인조직 등의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연습을 포함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과 같은 조에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군수는 체육시설에 상설 스포츠교실을 설치·운영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계획을 세워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③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를 설치하고, 그 활용상태를 수시 점검 및 보수하여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각 “각 호”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구분	실내시설	실외시설	
	하·동절기 (연중)	하절기 (4월~9월)	동절기 (10월~3월)
조기	06:00~09:00	05:00~08:00	06:00~09:00
주간	09:00~18:00	08:00~19:00	09:00~18:00
야간	18:00~23:00	19:00~23:00	18:00~23:00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그 사용을 종료한 경우에도 해당 사용시간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 천재지변으

로 부득이하게 사용을 종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의 기능에 따라 일일 사용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제2호 중 “이용료” 를 “사용료” 로 한다.

제14조제1항과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군수는 사용료를 징수할 때 별표 5의 구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별표 5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허가 신청 시 관련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제시하여야 하고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면 그 중 감면율이 높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적용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100%” 를 “전액” 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 를 각각 “퍼센트” 로 하고,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 전액 반환
2. 사용예정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 총 사용료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3.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 총 사용료의 10퍼센트와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후 반환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전액 반환
7. 체육시설 관리운영자의 귀책으로 사용을 취소한 경우의 사용료 반환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 별표 3의2 기준을 준용

제1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군수는 사용료 반환신청이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반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 근무일 이내에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 절차가 필요하거나 재난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되, 가능한 최단시일 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사용자는 체육시설 사용 시 사고예방 및 질서유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체육시설을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제18조제1항 중 “설치할 수 있다.”를 “설치하되, 홍보물(입간판·현수막·벽보 등)은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 안내 등의 홍보물은 예외로 한다)”로 한다.

제22조 중 “사용자 및 이용자”를 “사용자”로 한다.

제2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단서를 삭제한다.

① 군수는 법 제9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그 관리 및 운영 사무의 일부를 「대구광역시 달성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성군 시설관리공단 또는 지역 생활체육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능력 있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 (제3조 관련)

명 칭	위 치	주요 시설
국 민 체 육 센 터	달성군 현풍읍 현풍동로 180	- 수영장, 헬스장
군 민 운 동 장	달성군 논공읍 논공로 697-10	- 축구장, 정구장, 배구장(족구장), 게이트볼장
군 민 체 육 관	달성군 현풍읍 현풍중앙로 130	- 다목적체육관, 다목적강당, 문화강의실 생활체육공간
달 성 테 크 노 스포 츠 센 터	달성군 유가읍 상리 971	- 수영장, 어린이놀이시설, 다목적강당, 문화강의실
논 공 축 구 장	달성군 논공읍 논공로 240	- 축구장(풋살장), 테니스장
구 지 축 구 장	달성군 구지면 내리 840	- 축구장
화 원 테 니 스 장	달성군 화원읍 인흥1길 58	- 실내테니스장, 실외테니스장
다 사 매 곡 테 니 스 장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 842	- 테니스장
현 풍 테 니 스 장	달성군 현풍읍 비슬로 675	- 테니스장
화 원 게 이 트 볼 장	달성군 화원읍 인흥길 253	- 게이트볼장
다 사 체 육 공 원	달성군 다사읍 다사로 441	- 축구장, 테니스장, 농구장, 족구장, 히딩크드림필드 풋살장, 다목적트랙, 어린이놀이터, 광장, 야외무대. 산책로
가 창 체 육 공 원	달성군 가창면 가창로 604	- 축구장, 테니스장, 농구장, 족구장, 풋살장, 다목적트랙, 어린이놀이터, 광장, 지압보도
명 곡 체 육 공 원	달성군 화원읍 인흥1길 12	- 인라인스케이트장, X-게임장, 인공암벽, 다목적운동장(축구장)
달 성 스포 츠 파 크	달성군 현풍읍 현풍동로 170	- 축구장, 테니스장, 전천후게이트볼장, 족구장, 농구장, 다목적체육관
진 천 천 파 크 골 프 장	화원읍 구라리 188-1	-파크골프장
논 공 위 천 파 크 골 프 장	논공읍 위천리 651	-파크골프장

명 칭		위 치	주요 시설
달 성 보 파 크 골 프 장		논공읍 남리 1	-파크골프장
가 창 파 크 골 프 장		가창면 옥분리 778-7	-파크골프장
유 가 한 정 파 크 골 프 장		유가읍 한정리 596-1	-파크골프장
구 지 평 촌 파 크 골 프 장		구지면 평촌리 1-43	-파크골프장
강 변 체 육 시 설	낙 동 강	달성강변야구장	달성군 논공읍 위천리 552-1번지 - 야구장, 선수대기실
		하빈지구 체육시설	달성군 하빈면 봉촌리 1200-3번지 - 야구장, 축구장, 농구장, 족구장
	금 호 강	금호강변 체육시설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 354-1번지 - 축구장, 족구장, 농구장 -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 기타체육시설(파크골프장, 다목적트랙 등)

[별표 2]

체육시설 전용 사용료 상한액 (제11조 관련)

구 분	사 용 구 분		체 육 경 기		체 육 경 기 외		
			평 일	토·공휴일	평 일	토·공휴일	
군민체육관	전용 사용	체육관	주간 (1시간)	50,000	60,000	70,000	80,000
			야간 (1시간)	60,000	80,000	80,000	100,000
		다목적 강당	주간 (1시간)	40,000	50,000	60,000	70,000
			야간 (1시간)	50,000	70,000	70,000	90,000
	강습료	단체강습		월 70,000 (주 3회)			
				월 60,000 (주 2회)			
				월 50,000 (주 1회)			
		개인강습 (1회 20분)	월 150,000 (주 3회)				
	회원권		1일 회원 (2시간)	5,000			
			월회원 (주5회, 1개월, 1일 2시간)	30,000			
달성테크노 스포츠센터	다목적 강당	주간 (1시간)	50,000	70,000	50,000	70,000	
		야간 (1시간)	60,000	80,000	60,000	80,000	
가창 체육공원	축구장	주간 (2시간)	70,000	100,000	200,000	300,000	
		야간 (2시간)	100,000	150,000	300,000	450,000	
	풋살장	주간 (1시간)	40,000	50,000			
		야간 (1시간)	50,000	60,000			
다사 체육공원	축구장	주간 (2시간)	70,000	100,000	200,000	300,000	
		야간 (2시간)	100,000	150,000	300,000	450,000	
	히딩크 드림필드풋살 장	주간 (1시간)	40,000	50,000	90,000	120,000	
		야간 (1시간)	50,000	60,000	120,000	180,000	
명곡 체육공원	인라인 스케이트장	주·야간	-	-	-	-	
		다목적운동장 (축구장)	주간 (2시간)	70,000	100,000	200,000	300,000
	야간 (2시간)		100,000	150,000	300,000	450,000	
군민운동장		주·야간	-	-	-	-	

구 분	사 용 구 분		체 육 경 기		체 육 경 기 외			
			평 일	토·공휴일	평 일	토·공휴일		
논 축 구 장	축 구 장	주 간 (2시간)	70,000	100,000	200,000	300,000		
		야 간 (2시간)	100,000	150,000	300,000	450,000		
	풋 살 장	주 간 (1시간)	40,000	50,000	105,000	135,000		
		야 간 (1시간)	50,000	60,000	135,000	165,000		
구 축 구 장	축 구 장	주 간 (2시간)	70,000	100,000	200,000	300,000		
		야 간 (2시간)	100,000	150,000	300,000	450,000		
강 변 야 구 장	마 사 토	주 간 (2시간)	45,000	70,000	90,000	140,000		
	인 조 잔 디		65,000	90,000	150,000	200,000		
달 성 스 포 츠 파 크	주 경 기 장	축 구 장	주 간 (2시간)	80,000	120,000	300,000	500,000	
			야 간 (2시간)	120,000	180,000	500,000	800,000	
	보 조 경 기 장	축 구 장	주 간 (2시간)	70,000	100,000	200,000	300,000	
			야 간 (2시간)	100,000	150,000	300,000	450,000	
	다 목 적 체 육 관	전 용 사 용	주 간 (1시간)		40,000		-	
			야 간 (1시간)		50,000		-	
		강 습 료	단 체 강 습 (1회 1시간)	월 90,000 (주 3회)				-
				월 70,000 (주 2회)				-
		개 인 강 습 (1회 20분)	개 인 강 습 (1회 20분)	월 120,000 (주 3회)				-
				월 100,000 (주 2회)				-
개 인 사 용	1일 회원 (2시간)	1일 회원 (2시간)		5,000		-		
		월 회원 (주5회, 1개월, 1일 2시간)		50,000		-		
하 빈 지 구 체 육 시 설	야 구 장	주 간 (2시간)	45,000	70,000	90,000	140,000		
	축 구 장	주 간 (2시간)	35,000	50,000	100,000	150,000		
	농 구 장	주·야간	-	-	-	-		
	족 구 장	주·야간	-	-	-	-		

구 분	사 용 구 분		체 육 경 기		체 육 경 기 외	
			평 일	토·공휴일	평 일	토·공휴일
실외 테니스장 (가창체육공원,다 사체육공원, 화원테니스장, 다사매곡테니스장, 군민운동장, 현풍테니스장, 달성스포츠파크, 논공축구장 내)	개인	주 간 (2시간)	면당 12,000	면당 16,000	면당 24,000	면당 32,000
		야 간 (2시간)	면당 24,000	면당 28,000	면당 48,000	면당 56,000
	단체	주 간 (1개월, 1일 3시간)	면당 150,000	-	-	-
		야 간 (주1회,1개월, 1일 3시간)	면당 100,000	-	-	-
실내 테니스장 (화원테니스장)	개인	주 간 (2시간)	면당 28,000	면당 34,000	-	-
		야 간 (2시간)	면당 34,000	면당 44,000	-	-
	단체	주 간 (주1회,1개월, 1일 3시간)	면당 150,000	-	-	-
		야 간 (주1회,1개월, 1일 3시간)	면당 180,000	-	-	-
테니스 강습료	실내테니스장	주 3회	180,000		-	-
		주 2회	120,000		-	-
	실외테니스장	주 3회	130,000		-	-
		주 2회	75,000		-	-
	1일 강습료 (1회 20분)	실내테니스장	20,000		-	-
		실외테니스장	15,000		-	-
비 고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체육회에 등록된 가맹단체에 대하여는 주간·체육경기에 한하여 전용사용료의 30%를 감면한 금액을 징수함.(테니스장 단체사용료는 제외함)</li> <li>2. 군(위탁기관 포함)에 등록된 군(민)체육동호회에 대하여는 주간·체육경기에 한하여 전용사용료의 20%를 감면한 금액을 징수함.(테니스장 단체사용료는 제외함.)</li> <li>3. 테니스장 단체는 15명, 1개월 기준을 말하며 인원초과 시 1명당 20,000원 추가 징수함.</li> <li>4. 히딩크 드림필드 풋살장은 장애인에게 우선사용권 부여</li> <li>5. 테니스장 단체사용의 경우 평일(월~금)만 사용 가능하며 주말(토,일) 및 공휴일 사용은 제한함.</li> <li>6. 군민체육관과 다목적체육관 월회원의 경우 종목당 평일(월~금)사용기준이며, 주말(토,일) 및 공휴일 사용은 제한함.</li> <li>7. 군민체육관(체육관, 다목적체육관)과 테크노스포츠센터(다목적강당)의 사용료 산정을 위한 적용시간을 주간(09:00 ~ 18:00), 야간(18:00 ~ 23:00)으로 함.</li> <li>8. 할인대상자는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증빙서류)을 등록시 제시하여야 함.</li> </ol>					

[별표 3]

## 체육시설 사용료 상한액 (제11조 관련)

### 1. 달성국민체육센터

사용료

구분	성인 (만19세이상)			중.고생 (만13~만18세)			초등 (만6~12세)			유아 (만6세이하)	아쿠아로빅		1회입장요금		
	주 5회	주 3회	주 2회	주 5회	주 3회	주 2회	주 5회	주 3회	주 2회	주 2회	주 3회	주 2회	성인	중고 생	유아 초등
수영장 (월)	77,000	54,000	39,000	69,000	50,000	39,000	64,000	46,000	33,000	100,000	54,000	39,000	3,200	2,200	1,600
헬스장 (월)	1개월	주2회(그룹수업)		1회 입장요금			사물함 (월)		대		중		소		
	50,000	100,000		3,200					3,000		2,000		1,000		
비 고	1. 감면대상자는 대상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자에 한함 2. 개인사물함 사용료는 환불이 되지 않음 3. 장기등록 3개월에 대해서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음 4. 단체입장할인(30인 이상 10% / 100인 이상 20%)														

이용시간

구분	평 일	토요일	공휴일	일요일
헬스장	06:00 ~ 21:00	06:00 ~ 18:00	휴관	휴 관
수영장			09:00~18:00	

※ 고객의 실별 이용 마감시간은 시설이용시간의 30분 전으로 함.

## 2. 달성테크노스포츠센터

### 사용료

구분	성인 (만19세이상)			중.고생 (만13~만18세)			초등 (만6~12세)			유아 (만6세 이하)	아쿠아로빅		1회입장요금			
	주 5회	주 3회	주 2회	주 5회	주 3회	주 2회	주 5회	주 3회	주 2회	주 2회	주 3회	주 2회	성인	중고생	유아 초등	
수영장 (월)	77,000	54,000	39,000	69,000	50,000	39,000	64,000	46,000	33,000	100,000	54,000	39,000	3,200	2,200	1,600	
체육 문화 강좌	어린이 단체강좌						성인 단체강좌									
	주3회		주2회		주1회		일일특강		주3회		주2회		주1회		일일특강	
	80,000		60,000		50,000		30,000		70,000		50,000		40,000		20,000	
네버랜드 (회)	관내 어린이 (36개월 이상~만10세 이하)			4,000			개인사물함(1개월)			대		중				
	관외 어린이 (36개월 이상~만10세 이하)			8,000						3,000		2,000				
비 고	1. 감면대상자는 대상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신분증(확인증) 제시자에 한함. 2. 개인사물함 사용료는 환불이 되지 않음. 3. 수영장 단체입장 할인(30인 이상 10% 할인) 4. 체육·문화 강습의 강좌료는 강습 특성 및 정원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															

### 어린이놀이시설 감면대상 및 기준

감면율	대 상
50% 감면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4. 다자녀카드 소지자 중 두 자녀 이상을 둔 가족 5. 군수가 놀이시설 운영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10% 감면	1. 어린이 20인 이상 10% 할인

※ 중복감면사유 발생 시 감면율이 높은 한 가지만 적용한다.

### 이용시간

수 영 장	월~금	토요일	공휴일	일요일
		06:00~21:00	06:00~18:00	09:00~18:00

※ 수영장(샤워장) 이용(퇴실) 시간은 시설 운영시간의 30분 전으로 함.

[별표 5]

## 사용료의 감면(제14조 관련)

구 분	감면율 (할인율)	비 고
국가나 대구광역시, 달성군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각종 경기 대회 및 행사	전액면제	
히딩크 드림필드 풋살경기장 이용 등록장애인 및 장애인 시설·단체	전액면제	
군을 대표하여 각종 경기대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연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80%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80%이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50%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50%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50%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5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50%	
「노인복지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경로우대자	50%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5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0%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5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5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0%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5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50%	
「대구광역시 달성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	50%	
다자녀 가정(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미성년자 1인 이상 포함된 2자녀 이상 가정)	50%	
스포츠클럽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	50%	
스포츠클럽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등록스포츠클럽	30%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이 월 회원으로 수영장을 이용하는 경우	10%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u>각호와 같다.</u></p> <p>1 “체육시설”이란 <u>국민체육센터, 군민운동장, 군민체육관, 논공축구장, 테니스장, 회원게이트볼장, 다사체육공원, 가창체육공원, 명곡체육공원, 달성스포츠파크, 강변체육시설 등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란 그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u></p> <p>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u>텔레비전 포함</u>), 광고게시, 공연, 전람 등 그 밖에 행위를 말한다.</p> <p>3. ~ 5. (생략)</p> <p>11. “<u>군인</u>“이란 하사관 이하의 <u>군인</u>을 말하며, 이 경우 <u>전투경찰</u>을 포함한다.</p> <p>12. ~ 13. (생략)</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u>각 호와 같다.</u></p> <p>1. “체육시설”이란 「<u>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u>제2조제1호에 따라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로서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u>설치·운영하는 것을 말하며, 그 중 “부대시설”이란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u></p> <p>2. ----- -----(<u>텔레비전 포함</u>), ----- -----.</p> <p>3. ~ 10. (현행과 같음)</p> <p>11. “<u>군인</u>”이란 「<u>군인사법</u>」에 따른 하사 이하의 <u>군인</u> 및 「<u>병역법</u>」에 따른 <u>대체복무요원·사회복무요원</u>을 말한다.</p> <p>12. ~ 13. (현행과 같음)</p>

14. “체육동호인조직(단체)”이란 같은 체육활동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의 모임을 말한다.

15. (생략)

제4조(사용허가) ① (생략)

② 제1항의 허가신청에 있어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용내역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생략)

<신 설>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단체) 이상 경합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 5. (생략)

6. 경기연습·개인연습·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14.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7호에 따라 같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의 모임을 말한다.

15. (현행과 같음)

제4조(사용허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허가신청을 할 때 전용으로 사용하려는 사람은 그 사용내역 등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군수는 주민 누구나 체육시설 사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예약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단체) 이상 경합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 5. (현행과 같음)

6. 경기연습·개인연습·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다만, 경기연습은 직장이나 체육동호인조직 등의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연습을 포함

7. (생략)

제6조(시설의 개방) ① (생략)

②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 시설에 각 시설별로 상설스포츠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년간, 월간, 주간, 일간 주민이용계획을 수립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주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지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1. ~ 3.(생략)

③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 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를 배치하여야 하며, 활용상태를 수시 점검 보수하여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개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1. ~ 3.(생략)

제8조(사용의 제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

한다)

7. (현행과 같음)

제6조(시설의 개방) ①(현행과 같음)

② 군수는 체육시설에 상설 스포츠교실을 설치·운영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계획을 세워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1. ~ 3. (현행과 같음)

③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 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를 설치하고, 그 활용상태를 수시 점검 및 보수하여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개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1. ~ 3. (현행과 같음)

제8조(사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다.

1. ~ 4.(생략)

제9조(입장의 제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 6.(생략)

제10조(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구분	적용시간	구분	적용시간
초기	05:00 ~ 09:00	초기	05:00 ~ 09:00
주간	09:00 ~ 19:00	주간	09:00 ~ 19:00
야간	19:00 ~ 23:00	야간	19:00 ~ 23:00

② 제1항에 따라 사용기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그 경기가 종료된 경우에는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연기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체육시설의 기능에 따라 제1항에 따라 일일 사용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초과사용료)

있다.

1. ~ 4. (현행과 같음)

제9조(입장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 6. (현행과 같음)

제10조(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구분	실내시설	실외시설	
	하·동절기 (연중)	하절기 (4월~9월)	동절기 (10월~3월)
초기	06:00~09:00	05:00~08:00	06:00~09:00
주간	09:00~19:00	08:00~19:00	09:00~19:00
야간	19:00~22:00	19:00~23:00	19:00~23:00

② 제1항에 따른 사용기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그 사용을 종료한 경우에도 해당 사용시간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 천재지변으로 부득이하게 사용을 종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의 기능에 따라 일일 사용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초과사용료)

2. 초과시간당 이용료 : 해당 기준이용료의 50퍼센트

#### 제14조(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이 주최하는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 전액

2. 군을 대표하여 각종 경기대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연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전액

3. 어린이 및 청소년 육성을 위한 학교 주관 경기 행사 : 100분의 30

4. (삭제 2015.9.30)

5. (삭제 2021.6.10.)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00분의 50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노인복지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경로우대자,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2. 초과시간당 사용료 : 해당 기준사용료의 50퍼센트

#### 제14조(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사용료를 징수할 때 별표 5의 구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자.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6. 국민체육센터 여성수영 월회  
원 중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가임(可妊) 여성 : 100분의 10

7. 히딩크 드림필드 풋살경기장  
이용 등록장애인 및 장애인 시  
설·단체 : 전액

8.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 전액

② 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따라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면 그 중 감면율이 높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적용한다.

③ ~ ④(생략)

제15조(사용료의 반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별표 5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  
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허가 신청  
시 관련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제  
시하여야 하고 둘 이상의 감면사  
유에 해당하면 그 중 감면율이  
높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  
료를 적용한다.

③ ~ ④(현행과 같음)

제15조(사용료의 반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취소신청을 하였을 경우 : 100%반환

2. 사용예정일 1일 전부터 9일 전까지 취소신청을 하였을 경우 : 1일당 10%씩 90%까지 반환

3.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의 경우 : 미반환

4. 사용허가 시설의 특별한 사정(제16조제1항의 경우는 제외)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 : 100%반환

5. 천재지변 그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100%반환

6. 강습에 의한 월 사용료는 강습개시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에는 총 사용료의 10%를 공제 후 반환하고, 강습개시일 이후 사용을 취소한 때에는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를 공제 후 반환

<신 설>

1.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 전액 반환

2. 사용예정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 총 사용료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3.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 총 사용료의 10퍼센트와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후 반환

4. -----  
-----  
----- : 전액 반환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반환

6. -----  
-----  
----퍼센트-----, -----  
-----  
-----  
퍼센트-----

7. 체육시설 관리운영자의 귀책으로 사용을 취소한 경우의 사용료

② ~ ③ (생략)

<신 설>

제17조(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체육 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손상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제18조(사용자의 부대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중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반환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 별표 3의2 기준을 준용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군수는 사용료 반환신청이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반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 근무일 이내에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 절차가 필요하거나 재난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되, 가능한 최대한의 시일 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7조(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는 체육시설 사용 시 사고예방 및 질서유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체육시설을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8조(사용자의 부대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되, 홍보물(입간판·현수막·벽보 등)은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안내 등의 홍보물은 예외로 한다.)

② ~ ③ (생략)

제22조(체육지도자의 배치) 군수는 체육시설의 사용자 및 이용자에 대한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24조(체육시설의 위탁관리) ①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체육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 ⑥ (생략)

⑦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운영 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재위탁 할 수 있다. 다만, 군에서 출자·출연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별도의 위탁기간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1]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제3조 관련)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22조(체육지도자의 배치) 군수는 체육시설의 사용자에 대한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24조(체육시설의 위탁관리) ① 군수는 법 제9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그 관리 및 운영 사무의 일부를 「대구광역시 달성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성군 시설관리공단 또는 지역 생활체육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능력 있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 ⑥ (현행과 같음)

⑦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운영 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재위탁 할 수 있다.

[별표 1]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제3조 관련)

명 칭	위 치	주요 시설
국민체육센터	달성군 현풍읍 현풍동로 180	- 수영장, 헬스장, 에어 로빅장
(생략)		
(추가) 달성테크노 스포츠센터		
(생략)		

[별표 2]

체육시설 전용 사용료 상한액(제11조 관련)

구 분	사용구분	체육경기		체육경기의외		
		평일	토공휴일	평일	토공휴일	
(생략)						
<추> 달성테크노 스포츠센터	다목 적 강당	주간 (1시간)				
		야간 (1시간)				
(생략)						
비고	1.~6.(생략) 7. 군민체육관과 다목적체육관은 사용료 산정을 위한 적용시간을 주간(09:00 ~ 18:00), 야간(18:00 ~ 23:00)으로 함 8. (생략)					

[별표 3]

체육시설 사용료 상한액 (제11조 관련)

명 칭	위 치	주요 시설
국민체육센터	달성군 현풍읍 현풍동로 180	- 수영장, 헬스장
(현행과 같음)		
달성테크노 스포츠센터	달성군 유가읍 상리 971	- 수영장, 어린이놀이시 설, 다목적강당, 문 화강의실
(현행과 같음)		

[별표 2]

체육시설 전용 사용료 상한액(제11조 관련)

구 분	사 용 구 분	체육경기		체육경기의외		
		평일	토공휴일	평일	토공휴일	
(현행과 같음)						
달성테 크노스 포츠센 터	다 목 적 강 당	주간 (1시간)	50,000	70,000	50,000	70,000
		야간 (1시간)	60,000	80,000	60,000	80,000
(현행과 같음)						
비고	1.~6.(현행과 같음) 7. 군민체육관(체육관, 다목적체육관)과 테크노스포츠센터(다목적강당) 의 사용료 산정을 위한 적용시간을 주간(09:00 ~ 18:00), 야간 (18:00 ~ 23:00)으로 함. 8. (현행과 같음)					

[별표 3]

체육시설 사용료 상한액 (제11조 관련)

1. 달성국민체육센터

사용료

시설명	구분	성인 (만19세 이상)	중.고생 (만13~만18세)	초등 (만6~12세)	유아 (만6세 이하)	아쿠아로빅	1회입장요금
달성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월)						
	헬스장 (월)	1개월	주2회(그룹수업)	1회 입장요금	사물함(월)	대	중 소
비고	(생략)						

■ 이용시간

구분	평일	토요일	일요일/공휴일
헬스장	06:00 ~ 22:00	06:00 ~ 22:00	휴 관
수영장	06:00 ~ 22:00	06:00 ~ 18:00	09:00 ~ 18:00

※ 매월 1째주, 3째주 일요일은 전관휴관(월2회)  
※ 고객의 실별 이용 마감시간은 시설이용시간의 30분 전으로 함.

<신설>

구분	성인 (만19세 이상)	중.고생 (만13~만18세)	초등 (만6~12세)	유아 (만6세 이하)	아쿠아로빅	1회입장요금
수영장 (월)						
헬스장 (월)	1개월	주2회(그룹수업)	1회 입장요금	사물함(월)	대	중 소
비고	(현행과 같음)					

■ 이용시간

구분	평일	토요일	공휴일	일요일
헬스장	06:00 ~ 21:00	06:00 ~ 18:00	휴관	휴 관
수영장	06:00 ~ 21:00	06:00 ~ 18:00	09:00 ~ 18:00	휴 관

※ 고객의 실별 이용 마감시간은 시설이용시간의 30분 전으로 함.

2. 달성테크노스포츠센터

□ 사용료

구분	성인 (만19세 이상)	중.고생 (만13~만18세)	초등 (만6~12세)	유아 (만6세 이하)	아쿠아로빅	1회입장요금		
수영장 (월)	주5회	주3회	주2회	주5회	주3회	주2회		
	77,000	54,000	39,000	69,000	50,000	39,000		
체육문화강좌	어린이 단체강좌			성인 단체강좌				
	주3회	주2회	주1회	일일특강	주3회	주2회	주1회	일일특강
네바랜드(회)	관내 어린이 (36개월 이상~만10세 이하)		4,000		개인사물함 (1개월)		대	중
	관외 어린이 (36개월 이상~만10세 이하)		8,000				3,000	2,000
비고	1. 감면대상자는 대상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신분증(확인증) 제시자에 한함. 2. 개인사물함 사용료는 환불이 되지 않음. 3. 수영장 단체입장 할인(30인 이상 10% 할인) 4. 체육·문화 강습의 강좌료는 강습 특성 및 정원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							

□ 어린이놀이시설 감면대상 및 기준

<신설>

감면율	대 상
50% 감면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4. 다자녀카드 소지자 중 두 자녀 이상을 둔 가족 5. 군수가 놀이시설 운영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10% 감면	1. 어린이 20인 이상 10% 할인

※ 중복감면사유 발생 시 감면율이 높은 한 가지만 적용한다.

이용시간

수영장	월~금	토요일	공휴일	일요일
	06:00~21:00	06:00~18:00	09:00~18:00	휴관

※ 수영장(샤워장) 이용(퇴실) 시간은 시설 운영시간의 30분 전으로 함.

[별표 5]

사용료의 감면(제14조 관련)

구 분	감면율 (할인율)	비고
국가나 대구광역시, 달성군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각종 경기 대회 및 행사	전액 면제	
히딩크 드림필드 풋살경기장 이용 등록장애인 및 장애인 시설·단체	전액 면제	
군을 대표하여 각종 경기대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연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80%	변경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80% 이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50%	신설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50%	신설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 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50%	신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50%	신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50%	
「노인복지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경로우대자	50%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5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0%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5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5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0%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5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50%	
「대구광역시 달성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	50%	신설
다자녀 가정(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미성년자 1인 이상 포함된 2자녀 이상 가정)	50%	신설
스포츠클럽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지정스포츠 클럽	50%	신설
스포츠클럽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등록스포츠 클럽	30%	신설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이 월 회원으로 수영장을 이용하는 경우	10%	

##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3항에 따라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이 제1호에 따른 행사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고,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사 또는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의 일부를 감경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 다. 삭제 <2016. 8. 2.>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4.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5.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7. 그 밖에 사용료 감경이 필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행사 또는 활동

**제21조의2(이용료나 교습비의 반환)** 체육시설업자는 법 제22조제1항제4호 각 목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이용료나 그 시설을 이용한 교습행위의 교습비(이하 “이용료”라 한다)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에 관하여 일반이용자와 약정하지 않은 때에는 별표 3의2의 이용료의 반환기준에 따라 해당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용료를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체육시설업자가 이용료의 반환을 지연할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반환 이용료에 연 100분의 15를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함께 반환해야 한다.

## □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스포츠클럽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스포츠클럽의 행사·강습·훈련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지정스포츠클럽: 사용료의 100분의 100 이하
2.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 사용료의 100분의 80 이하

## □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13조(사용료 등의 감면)** ③ 별표 3 및 별표 4의 이용료(초과 이용료를 포함한다)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50퍼센트를 감경하고, 제6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50퍼센트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
- 다.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미성년자가 1인 이상 포함된 가정에 한정한다)에 속하는 사람
- 라. 「대구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

## □ 대구광역시 달성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7조(우대)** ① 군수는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이 군에서 설치하여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있는 시설물 등을 이용하고자 할 때 그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입장료·주차료·수강료 등을 감면해 줄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른 시설물 등 관련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자녀가정”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을 말한다. 단,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여야 한다.

## □ 대구광역시 달성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사업) 공단은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개정 2016.9.30)

1. 문화·관광시설의 관리 및 운영사업
2.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사업
3. 사회복지시설의 관리 및 운영사업
4. 공원·유원지와 자연휴양림의 관리 및 운영사업
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으로서 군수의 승인을 얻은 사업
6.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개정 2019.12.30.)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따른 부대사업(신설 2019.12.30.)

# 대구광역시 달성군 낙동가람 수변 역사누림길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1. 의안번호: 제2427호

2. 제 출 일: 2023년 12월 6일

3. 제 출 자: 달성군수

## 4. 제안사유

- 낙동가람 수변 역사누림길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5.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 등에 관한 사항(안 제1조~안 제4조)
-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5조~안 제6조)
- 시설의 사용에 관한 사항(안 제7조~안 제14조)
- 위탁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5조~안 제21조)

## 6.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8조

## 7. 검토의견

- 대구시의 3대문화권(신라, 가야, 유교 및 생태관광)사업의 일환인 낙동가람 수변 역사누림길은 화원읍 사문진로1길 40-14번지 일원의 화원지구와 구지면 도동리 55번지 일원의 도동지구로 이루어져 있으며, 낙동강변을 역사적인 스토리텔링과 함께 힐링과 위락의 공간으로 개발하고, 낙동강 수변에 형성된 역사·문화자원과 자연생태자원을 활용해 문화·예술이 결합된 복합 문화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구지면 도동리에 있는 도동서원이 2019년 7월에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이래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으나 화장실, 매점, 카페 등 편의시설의 부족으로 탐방객들이 불편을 호소하였던 바, 한옥 스테이 네 동과 유물전시 등을 위한 ‘조선오현역사관’ 그리고 카페 등 ‘주민커뮤니티 시설’, 강의 및 체험 등을 위한 ‘다목적공간’의 조성공사가 완료되면 도동서원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더욱 다양한 볼거리와 안락한 편의시설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본 조례의 제정은, 안 제5조~안 제6조에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안 제14조에 시설의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안 제21조에 위탁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새롭게 조성되는 낙동가람 수변 역사 누림길(화원, 도동지구)의 원활한 관리와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 대구광역시 달성군 낙동가람 수변 역사누림길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낙동가람 수변 역사누림길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이 조례의 적용 대상의 명칭은 낙동가람 수변 역사누림길이라 하고 그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화원지구: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사문진로1길 40-14 일원
2. 도동지구: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도동리 55 일원

제3조(시설의 범위) 낙동가람 수변 역사누림길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원지구: 역사문화체험시설, 전망대, 잔디광장, 초화원, 정원, 주차장 및 그 밖의 시설, 수목, 조형물
2. 도동지구: 도동유교문화관, 서원문화관, 복합문화관, 서원스тей, 공동취사장, 린넨실, 숙직실 및 그 밖의 시설, 수목, 조형물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물”이란 제3조제1항 각 호 시설에 설치되거나 비치된 기기, 장비, 비품, 그 밖의 물건 등을 말한다.
2. “사용자”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허가·허락·승낙 등(이하 “허가 등”이라 한다)을 받아 시설이나 그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3. “사용료”란 사용자가 시설이나 그 시설물을 사용하는 대가로 납부

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수탁자”란 제15조제1항에 따라 시설 관리·운영사무를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5. “관리자”란 제5조에 따라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군수 또는 수탁자를 말한다.
6. “서원스тей”란 제3조제2호에 따른 도동지구의 숙박시설을 말한다.

## 제2장 관리·운영

제5조(관리·운영자) ① 시설의 관리·운영은 군수가 한다.

② 군수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그 관리·운영업무의 일부를 자격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업무의 범위) 제5조에 따른 관리·운영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시설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시설 이용자의 편의도모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설 보존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

제7조(이용시간 및 휴관일) ① 시설의 이용시간 및 휴관일은 별표 1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용시간이나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사용자가 별표 1에 따른 시설 이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한 상태에서 임의로 사용을 종료한 경우에는 허가받은 이용시간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용시간과 휴관일은 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군민 등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의 징수) ① 군수는 사용자로부터 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시설사용료는 별표 2에 따르며, 시설사용료는 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군민 등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표 2 사용료 기준의 범위에서 시설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다.

④ 사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이 정하는 바를 따르거나 준용한다.

제9조(사용료의 감면 등) ① 제8조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감면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사용료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예약 또는 시설 이용 시에 관리자에게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이 행사 등의 주관을 위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공익적인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시설의 사용 전까지 낙동가람 수변 역사누림길 시설사용료 면제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시설사용료의 반환) ① 군수는 사용자가 시설의 사용 예약을 취소

하거나 제13조에 따라 예약이 취소된 경우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시설 사용료를 반환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용자가 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시설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1. 관리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2. 그 밖에 제1호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11조(시설 사용 예약) ① 시설 사용 예약은 사용자가 예약을 한 후 사용료를 관리자가 지정한 금융계좌에 입금 또는 납부한 시점부터 예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관리자가 정한 기간 이내에 입금 또는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약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③ 시설 사용 예약순위는 신청순위에 따른다.

제12조(매매·교환 등 금지) ① 서원스테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하며, 예약자는 그 예약 및 사용에 관한 지위를 임의로 타인에게 매매 또는 교환·양도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원스테이 예약자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및 예약자 배우자의 부모는 예약자 본인과의 관계를 입증하고 예약한 서원스테이를 이용할 수 있다

제13조(사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환자인 경우
2. 허가 없이 취사, 야영(숙박) 및 영리행위를 하는 등 관리자가 금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 시설 또는 시설물을 파손·훼손하는 경우
4. 시설을 이용하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에 위해나 위협을 준 경우

5. 그 밖에 시설의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제14조(손해배상) ①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시설물을 훼손, 파손하거나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며, 원상복구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어려울 경우에는 시가로 배상하여야 한다.
- ② 관리자는 배상을 받은 경우 그 금액을 세외수입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제3장 위탁관리·운영

제15조(위탁관리·운영) ① 군수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시설 관리·운영 사무의 일부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이 출자·출연한 기관
2. 제6조에 따른 시설의 관리·운영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법인 등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과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른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다.

③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운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재계약 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하여지지 아니한 위탁방법,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시설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위탁 협약으로 정한다.

⑤ 위탁 관리·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 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6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수탁받은 재산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수탁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3자에게 권리 설정, 전매, 교환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3. 수탁자는 수탁받은 재산 및 제19조제1항에 따른 운영지원금을 수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4. 수탁자는 매년 시설 관리·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협의 후 그 관리·운영계획에 따라 시설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제17조(위탁협약의 해지) 위탁협약의 해지에 관하여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16조를 준용한다.

제18조(재산의 취득 등) ① 수탁자는 시설의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재산을 취득, 매각 및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재산은 취득한 날에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귀속 된다.

제19조(운영지원 등) ① 군수는 수탁자의 수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자의 수탁사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 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원상회복) ① 수탁자는 시설을 관리·운영 또는 사용함에 있어 고의나 과실로 시설·시설물을 멸실, 훼손하는 등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원상회복하여야 하며,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어려운 경우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배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7조에 따라 위탁협약이 해지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에

계 시설의 운영상황 및 주요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연 1회 이상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필요시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자의 사무에 대한 장부나 그 밖의 서류를 조사하거나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제2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제3항에 따라 명령을 받은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조치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4장 보칙

제2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준용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시설 이용시간 및 휴관일(제7조 관련)

1. 용어의 뜻

- 가. “공연장”이란 화원지구 역사문화체험시설(지하1층) 내 공연, 강연 등을 위한 공간을 말한다.
- 나. “체험관”이란 화원지구 역사문화체험시설(지하1층) 내 전시공간을 말한다.
- 다. “공용시설물”이란 도동지구의 관리사무소, 복합문화관, 도동유교문화관, 서원문화관, 화장실을 말한다.
- 라. “서원스тей”란 도동지구의 숙박시설을 말한다.

2. 시설 이용시간 및 휴관일

가. 화원지구

구 분		이용시간	휴관일	비 고
공연장	오전	9:00 ~ 12:00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좌석 258석</li> <li>○필요시 이용시간 조정, 휴관일 설정 가능</li> </ul>
	오후	13:00 ~ 17:00		
	야간	18:00 ~ 22:00		
체험관		9:00 ~ 18:00		

나. 도동지구

구 분		이용시간	휴관일	비 고
공용시설물		10:00 ~ 17:00	매주 화요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필요시 이용시간, 휴관일 조정 가능</li> </ul>
서원스тей	입실	입실일 15:00 ~ 22:00		
	퇴실	퇴실일 11:00까지		

[별표 2]

시설사용료(제8조제2항 관련)

1. 용어의 뜻

- 가. “성수기”란 1년 중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 나. “비수기”란 1년 중 성수기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말한다.
- 다. “주말”이란 금요일, 토요일 및 법정공휴일(임시공휴일은 제외)의 전일(前日)을 말한다.
- 라. “주중”이란 주말을 제외한 날을 말한다.

2. 시설사용료 기준

가. 화원지구

구 분	사용기준		사 용 료(원)	비 고
공연장	오전	9:00 ~ 12:00	50,000	시설 일부 사용 시 전부 사용 간주
	오후	13:00 ~ 17:00	65,000	
	야간	18:00 ~ 22:00	79,000	
	1일	9:00 ~ 22:00	135,000	

- 1) 오전, 오후, 야간을 각 1회로 보고, 별도의 허가 대상으로 함.
- 2)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사용하는 일반인에 대하여는 당기준 사용료의 30%를 가산함.
- 3) 공연 연습 또는 무대설비, 행사 준비를 위한 사용 시는 해당 기준 사용료의 50%로 함.
- 4) 사용시간 초과 시 매시간 초과마다 사용료의 30%를 가산함.

나. 도동지구

구 분		면적(㎡)	사용 기준	사 용 료(원)		기준인원	비 고
시설명				성수기 및 주말	비수기의 주중		
서원 스테이	7동	36	1박	90,000	70,000	2인	방 1개
	8, 10동	38		100,000	80,000	3인	방 2개
	9동	51		130,000	100,000	4인	

- 1) 추가인원 2명까지 가능, 1인 1만원 추가

[별표 3]

시설사용료 감면기준(제9조제1항 관련)

1. 용어의 뜻

- 가.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 나. “국가보훈대상자”란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제21조의2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를 말한다.
- 다. “다자녀가정”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을 말한다.
- 라. “달성군민”이란 주민등록표상 달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시설사용료 감면기준

구분	감면대상	기준	감면요율	비 고
서원스тей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사용료의 50% 할인	※비수기의 주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	사용료의 30% 할인	
	국가보훈대상자	1~3급	사용료의 50% 할인	
		4~7급	사용료의 30% 할인	
	다자녀가정		사용료의 30% 할인	
	달성군민			사용료의 30% 할인
			사용료의 10% 할인	※성수기(주중, 주말 불문) 및 주말

- 가. 감면 적용 예약은 감면대상자의 명의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렇게 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보호자(법정대리인 등을 말한다)가 자신의 명의로써 할 수 있다.
- 나. 감면대상자는 시설 이용 전에 서원스тей 관리·운영자에게 감면에 필요한 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1호 후단의 경우 예약한 보호자

- 가 동행하여 감면에 필요한 증명서를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 다. 시설사용료 감면은 1인 1일당 1시설에 한한다.
- 라. 사용료 감면은 중복적용 하지 않으며, 감면 사유가 중복될 경우 감면율이 큰 것을 적용한다.
- 마. 위 감면기준에도 불구하고 시설사용료 감면과 관련하여 협약 체결 기관·단체와 별도의 협약을 체결한 경우 그 협약 내용에 따른다.

[별표 4]

시설사용료 반환 기준(제10조제1항 관련)

1. 서원스टे이

구 분 (예약 취소 시기)		반환 기준		비고
		주 중	주 말	
성 수 기	사용예정일 10일 전	사용료 전액 반환	사용료 전액 반환	-
	사용예정일 7일 전	사용료의 10% 공제 후 반환	사용료의 20% 공제 후 반환	
	사용예정일 5일 전	사용료의 30% 공제 후 반환	사용료의 40% 공제 후 반환	
	사용예정일 3일 전	사용료의 50% 공제 후 반환	사용료의 60% 공제 후 반환	
	사용예정일 1일 전, 사용예정일 당일	사용료의 80% 공제 후 반환	사용료의 90% 공제 후 반환	
비 수 기	사용예정일 2일 전	사용료 전액 반환	사용료 전액 반환	-
	사용예정일 1일 전	사용료의 10% 공제 후 반환	사용료의 20% 공제 후 반환	
	사용 예정 당일	사용료의 20% 공제 후 반환	사용료의 30% 공제 후 반환	



##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  
    파.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시설의 설치 및 관리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1. 사업개요

‘낙동가람 수변 역사누림길’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

## 2. 비용 발생 요인

시설 관리 및 운영에 따른 전출금, 자산취득비 등의 비용 발생

## 3. 관련조문

「대구광역시 달성군 낙동가람 수변 역사누림길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제19조

## 4. 비용 추계결과

### 가. 추계의 전체

1) 낙동가람 수변 역사누림길 연간 운영비: 연 663,632천원

○ 화원지구: 연 503,483천원

- 경상전출금: 연 465,746천원

• 인 건 비: 연 255,191천원

• 일반운영비: 연 174,199천원

• 수선유지비 등: 연 36,356천원

- 자산취득비: 연 37,737천원

○ 도동지구: 연 160,149천원

- 경상전출금: 연 92,972천원

• 인 건 비: 연 37,701천원

• 일반운영비: 연 51,271천원

• 수선유지비 등: 연 4,000천원

- 자산취득비: 연 67,177천원

### 나. 추계 결과 : 약663,632천원 정도(연간)

○ 「대구광역시 달성군 낙동가람 수변 역사누림길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시행에 따른 시설 운영비용은 연간 약663,632천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다. 재원조달방안 : 균비 663,632천원 정도(연간)

## 5. 연도별 비용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4)	2차년도 (2025)	3차년도 (2026)	4차년도 (2027)	5차년도 (2028)	계
세 입		61,098	73,476	84,312	92,358	100,825	412,069
지방세		61,098	73,476	84,312	92,358	100,825	412,069
의존재원		-	-	-	-	-	-
세 출		663,632	585,480	602,744	620,526	638,842	3,111,224
경상전출금		558,718	575,480	592,744	610,526	628,842	2,966,310
자산취득비		104,914	10,000	10,000	10,000	10,000	144,914
재원 조달		663,632	585,480	602,744	620,526	638,842	3,111,224
의존 재원	소 계	-	-	-	-	-	-
	보조금	-	-	-	-	-	-
	지방교부세	-	-	-	-	-	-
자체 수입	소 계	663,632	585,480	602,744	620,526	638,842	3,111,224
	지방세	663,632	585,480	602,744	620,526	638,842	3,111,224
	세외수입	-	-	-	-	-	-
지방채		-	-	-	-	-	-
기 금		-	-	-	-	-	-
특별회계		-	-	-	-	-	-
군 비		663,632	585,480	602,744	620,526	638,842	3,111,224
기 타 (차입금, 민자, 예비비 등)		-	-	-	-	-	-

## 6. 작성자 : 문화관광국 관광과 관광시설팀장 김광섭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화석박물관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의안번호: 제2428호

2. 제 출 일: 2023년 12월 6일

3. 제 출 자: 달성군수

## 4. 제안사유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다자녀가정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반영하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장애인의 장애 정도와 관련된 용어를 변경하고자 함.

## 5. 주요내용

- 관람료 감면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수강료 등의 감면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 별표 3)

## 6. 관계법령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 7.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다자녀가정 지원 대상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단, 최연소 자녀가 18세 미만)으로 확대하여 반영하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장애인의 장애 정도와 관련된 용어를 1~3등급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군민의 관람료 감면 수혜를 확대하고, 용어를 명확히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화석박물관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화석박물관 설립·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이 경우 감면 신청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별표 3 중 장애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장애인	50%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	----------------------------------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수강료 감면 기준 (제14조 관련)		
유형별 구분	할인율	대상 및 내용
수급자	5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국가유공자	5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장애인	50%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달성군민	20%	달성군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사람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제7조 (생략)</p> <p>제8조(관람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7조에도 불구하고 제7조1항에 따른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p> <p>1. ~ 13. (생략)</p> <p>14. <u>다둥이행복카드를 소지한 달성군민으로서 3자녀 이상을 둔 가족</u></p> <p>15. ~ 19. (생략)</p> <p>제9조~제45조 (생략)</p> <p>[별표 3] 수강료 감면 기준</p>	<p>제1조~제7조 (현행과 같음)</p> <p>제8조(관람료의 감면) ① ----- ----- -----.</p> <p>1. ~ 13. (현행과 같음)</p> <p>14.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이 경우 감면 신청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p> <p>15. ~ 19. (현행과 같음)</p> <p>제9조~제45조 (현행과 같음)</p> <p>[별표 3] 수강료 감면 기준</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colspan="3">수강료 감면 기준 (제14조 관련)</th> </tr> <tr> <th style="width: 15%;">유형별 구분</th> <th style="width: 15%;">할인율</th> <th style="width: 70%;">대상 및 내용</th> </tr> </thead> <tbody> <tr> <td>수급자</td> <td>50%</td> <td>(생략)</td> </tr> <tr> <td>국가유공자</td> <td>50%</td> <td>(생략)</td> </tr> <tr> <td>장애인</td> <td>50%</td> <td>「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1~3급 장애인)</td> </tr> <tr> <td>달성군민</td> <td>20%</td> <td>(생략)</td> </tr> </tbody> </table>	수강료 감면 기준 (제14조 관련)			유형별 구분	할인율	대상 및 내용	수급자	50%	(생략)	국가유공자	50%	(생략)	장애인	50%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1~3급 장애인)	달성군민	20%	(생략)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colspan="3">수강료 감면 기준 (제14조 관련)</th> </tr> <tr> <th style="width: 15%;">유형별 구분</th> <th style="width: 15%;">할인율</th> <th style="width: 70%;">대상 및 내용</th> </tr> </thead> <tbody> <tr> <td>수급자</td> <td>50%</td> <td>(현행과 같음)</td> </tr> <tr> <td>국가유공자</td> <td>50%</td> <td>(현행과 같음)</td> </tr> <tr> <td>장애인</td> <td>50%</td> <td>「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td> </tr> <tr> <td>달성군민</td> <td>20%</td> <td>(현행과 같음)</td> </tr> </tbody> </table>	수강료 감면 기준 (제14조 관련)			유형별 구분	할인율	대상 및 내용	수급자	50%	(현행과 같음)	국가유공자	50%	(현행과 같음)	장애인	50%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달성군민	20%	(현행과 같음)
수강료 감면 기준 (제14조 관련)																																					
유형별 구분	할인율	대상 및 내용																																			
수급자	50%	(생략)																																			
국가유공자	50%	(생략)																																			
장애인	50%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1~3급 장애인)																																			
달성군민	20%	(생략)																																			
수강료 감면 기준 (제14조 관련)																																					
유형별 구분	할인율	대상 및 내용																																			
수급자	50%	(현행과 같음)																																			
국가유공자	50%	(현행과 같음)																																			
장애인	50%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달성군민	20%	(현행과 같음)																																			

##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자녀가정”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을 말한다. 단,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여야 한다.

##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장애인의 장애 정도 등) 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 정도는 별표 1과 같다.

## [별표 1] 장애인의 장애 정도(제2조 관련)

## 1. 지체장애인

가. 신체의 일부를 잃은 사람

##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가)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 나)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을 잃은 사람
- 다) 두 다리를 가로발목뼈관절(Chopart's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라)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가)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 나)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잃은 사람
- 다)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및 다섯째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 라) 한 다리를 발목발허리관절(lisfranc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마)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 이하생략 -

# 대구광역시 달성군 임신·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의안번호: 제2429호

2. 제 출 일: 2023년 12월 6일

3. 제 출 자: 달성군수

## 4. 제안사유

- 영유아 양육의 필수품인 유모차 대여료를 무료로 전환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 5. 주요내용

- 유모차 이용료 무료 (안 제7조제1항 별표)
- 유모차 대여기간 명확화 (안 제7조제1항 별표)

## 6. 관계법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 7.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젊은 도시 달성’ 을 가꾸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을 장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달성군에 주소를 둔 3~36개월 영유아가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유모차 대여사업 이용료를 무료로 하고, 유모차의 대여기간을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대여·연장 대여” 로 명확히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 대구광역시 달성군 임신·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임신·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표]”를 “별표”로 한다.

- ① 군수는 육아용품을 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여대상, 이용료, 대여기간은 별표를 따른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 표]

○ 유모차 이용료 및 대여기간 등(제7조제1항 관련)

구 분	내 용
대여대상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주소를 둔 3~36개월 영유아가 있는 가정
이 용 료	무료
대여기간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대여·연장 대여 ※ 단, 잔여 대여 가능 기간 6개월 미만 시 대여기간은 그 기간 종료일까지 ※ 대여 가능 기간: 영유아가 주민등록상 36개월 종료일까지

○ 유모차 또는 그 구성품 분실 시 배상 기준(제7조제2항 관련)

구 분	구입 시기	배상금액
유모차 분실	1년 이하	구입가격의 90%
	1년 초과 2년 이하	구입가격의 70%
	2년 초과	구입가격의 50%
구성품 분실	불문	아래 유모차 파손·훼손 시 배상 기준 적용

○ 유모차 파손·훼손 시 배상 기준(제7조제2항 관련)

구 분	배상금액
대여기관 자체 보유 인력, 장비 및 부품으로 수리 가능한 경우	없음
대여기관 자체 보유 인력, 장비 및 부품으로 수리 불가능한 경우	소요비용의 50%
바코드 또는 보건소 스티커를 훼손한 경우	500원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육아용품의 이용료 등) ① 군수는 육아용품을 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u>이용료, 대여기간 및 연체료</u>는 [별표] 를 따른다.</p> <p>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육아용품을 대여 받은 사람이 이를 분실하거나 파손·훼손한 경우 그에게 배상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별표]를 따른다.</p> <p>③ ~ ⑤ (생략)</p> <p>[별표] ○ 유모차 <u>대여 이용기간 및 이용료 등</u> (제7조 관련)</p>	<p>제7조(육아용품의 이용료 등) ① ----- ----- <u>대여대상, 이용료, 대여기간</u>은 별표를 따른다.</p> <p>② ----- ----- ----- ----- <u>별표</u>를 -----.</p> <p>③ ~ ⑤ (현행과 같음)</p> <p>[별표] ○ 유모차 <u>이용료 및 대여기간 등</u>(제7조제1항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5%;">구 분</th> <th style="width: 25%;">내 용</th> <th style="width: 60%;">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u>이용료/1대당</u></td> <td style="text-align: center;"><u>6,000원</u></td> <td style="text-align: center;"><u>기본 6개월 기준, 연장 시 추가 납부 (1개월 기준 이용료 : 1,000원)</u></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대여기간</td> <td style="text-align: center;"><u>기본 6개월 최대 주민등록상 만 36개월 까지 연장가능</u></td> <td style="text-align: center;">* <u>대여 시 6개월, 1년 단위로 이용자가 선택하여 대여가능</u> * <u>단, 대여 시점이 만 24개월 이상 대상자 일 경우, 잔여개월 수 만큼 만 대여가능</u></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u>미반납 시 연체료/1일당</u></td> <td style="text-align: center;"><u>400원</u></td> <td style="text-align: center;"><u>연체료 미납자는 유모차 차용자격 없음(완납 시 가능)</u></td> </tr> </tbody> </table>	구 분	내 용	비 고	<u>이용료/1대당</u>	<u>6,000원</u>	<u>기본 6개월 기준, 연장 시 추가 납부 (1개월 기준 이용료 : 1,000원)</u>	대여기간	<u>기본 6개월 최대 주민등록상 만 36개월 까지 연장가능</u>	* <u>대여 시 6개월, 1년 단위로 이용자가 선택하여 대여가능</u> * <u>단, 대여 시점이 만 24개월 이상 대상자 일 경우, 잔여개월 수 만큼 만 대여가능</u>	<u>미반납 시 연체료/1일당</u>	<u>400원</u>	<u>연체료 미납자는 유모차 차용자격 없음(완납 시 가능)</u>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5%;">구 분</th> <th style="width: 45%;">내 용</th> <th style="width: 40%; text-align: center;">&lt;삭제&gt;</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u>대여대상</u></td> <td style="text-align: center;"><u>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주소를 둔 3~36개월 영유아가 있는 가정</u></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u>이용료</u></td> <td style="text-align: center;"><u>무료</u></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대여기간</td> <td style="text-align: center;"><u>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대여·연장 대여</u> * <u>단, 잔여 대여 가능 기간 6개월 미만 시 대여기간은 그 기간 종료일까지</u> * <u>대여 가능 기간: 영유아가 주민등록상 36개월 종료일까지</u></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lt;삭제&gt;</td> <td></td> <td></td> </tr> </tbody> </table>	구 분	내 용	<삭제>	<u>대여대상</u>	<u>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주소를 둔 3~36개월 영유아가 있는 가정</u>		<u>이용료</u>	<u>무료</u>		대여기간	<u>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대여·연장 대여</u> * <u>단, 잔여 대여 가능 기간 6개월 미만 시 대여기간은 그 기간 종료일까지</u> * <u>대여 가능 기간: 영유아가 주민등록상 36개월 종료일까지</u>		<삭제>		
구 분	내 용	비 고																										
<u>이용료/1대당</u>	<u>6,000원</u>	<u>기본 6개월 기준, 연장 시 추가 납부 (1개월 기준 이용료 : 1,000원)</u>																										
대여기간	<u>기본 6개월 최대 주민등록상 만 36개월 까지 연장가능</u>	* <u>대여 시 6개월, 1년 단위로 이용자가 선택하여 대여가능</u> * <u>단, 대여 시점이 만 24개월 이상 대상자 일 경우, 잔여개월 수 만큼 만 대여가능</u>																										
<u>미반납 시 연체료/1일당</u>	<u>400원</u>	<u>연체료 미납자는 유모차 차용자격 없음(완납 시 가능)</u>																										
구 분	내 용	<삭제>																										
<u>대여대상</u>	<u>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주소를 둔 3~36개월 영유아가 있는 가정</u>																											
<u>이용료</u>	<u>무료</u>																											
대여기간	<u>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대여·연장 대여</u> * <u>단, 잔여 대여 가능 기간 6개월 미만 시 대여기간은 그 기간 종료일까지</u> * <u>대여 가능 기간: 영유아가 주민등록상 36개월 종료일까지</u>																											
<삭제>																												

현행		개정안													
<p>○ 유모차 또는 그 구성품 분실 시 배상 기준(제7조제2항 관련)</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구입 시기</th> <th>배상금액</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유모차 분실</td> <td>1년 이하</td> <td>구입가격의 90%</td> </tr> <tr> <td>1년 초과 2년 이하</td> <td>구입가격의 70%</td> </tr> <tr> <td>2년 초과</td> <td>구입가격의 50%</td> </tr> <tr> <td>구성품 분실</td> <td>불문</td> <td>아래 유모차 파손·훼손 시 배상 기준 적용</td> </tr> </tbody> </table>		구분	구입 시기	배상금액	유모차 분실	1년 이하	구입가격의 90%	1년 초과 2년 이하	구입가격의 70%	2년 초과	구입가격의 50%	구성품 분실	불문	아래 유모차 파손·훼손 시 배상 기준 적용	○ <현행과 같음>
구분	구입 시기	배상금액													
유모차 분실	1년 이하	구입가격의 90%													
	1년 초과 2년 이하	구입가격의 70%													
	2년 초과	구입가격의 50%													
구성품 분실	불문	아래 유모차 파손·훼손 시 배상 기준 적용													
<p>○ 유모차 파손·훼손 시 배상 기준 (제7조제2항 관련)</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배상금액</th> </tr> </thead> <tbody> <tr> <td>대여기관 자체 보유 인력, 장비 및 부품으로 수리 가능한 경우</td> <td>없음</td> </tr> <tr> <td>대여기관 자체 보유 인력, 장비 및 부품으로 수리 불가능한 경우</td> <td>소요비용의 50%</td> </tr> <tr> <td>바코드 또는 보건소 스티커를 훼손한 경우</td> <td>500원</td> </tr> </tbody> </table>		구분	배상금액	대여기관 자체 보유 인력, 장비 및 부품으로 수리 가능한 경우	없음	대여기관 자체 보유 인력, 장비 및 부품으로 수리 불가능한 경우	소요비용의 50%	바코드 또는 보건소 스티커를 훼손한 경우	500원	○ <현행과 같음>					
구분	배상금액														
대여기관 자체 보유 인력, 장비 및 부품으로 수리 가능한 경우	없음														
대여기관 자체 보유 인력, 장비 및 부품으로 수리 불가능한 경우	소요비용의 50%														
바코드 또는 보건소 스티커를 훼손한 경우	500원														

##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1. 의안번호: 제2414호

2. 제출일: 2023년 12월 6일

3. 제출자: 달성군수

## 4. 제안사유

- 2023년을 마무리하는 결산 추경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등 세입 변경에 따른 재원을 조정 계상하고 현안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최소한의 사업비 부족분과 법정 경비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여 민선 8기 군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

## 5. 추가경정예산 개요

(단위: 백만 원)

회 계 별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총 계	1,040,121	985,340	54,781
일반회계	1,035,638	984,000	51,638
특별회계	4,483	1,340	3,143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70	70	0
의료급여기금	711	712	△1
치수사업	3,702	558	3,144

## 6. 주요 이월 사업 내역(이월액 15억이상)

(단위: 천 원)

구분	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이월액	비고 (이월사유)
정책추진단	논공 상하리 캠핑장 조성	시설비	5,700,000	5,089,267	선행 공정 지연
회계과	논공읍출장소 공공복합청사 건립	시설비	4,730,000	4,684,355	사전 및 행정절차 이행 지연
건설과	다사 죽곡2리 강정마을~죽곡 2지구 연결도로 개설	시설비	2,290,550	2,290,550	준공기한 미도래
건설과	가창 우록 동회관~백록 도시계획도로 개설	시설비	2,699,000	2,242,049	준공기한 미도래
건설과	군도 3호선(기세리 인근) 위험도로 개선사업	시설비	1,700,000	1,700,000	사전 및 행정절차 이행 지연
건설과	도로굴착복구	시설비	4,491,000	1,725,406	준공기한 미도래
안전총괄과	화원 설화성산지구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시설비	3,482,000	3,482,000	사전 및 행정절차 이행 지연
안전총괄과	지방하천정비 (현풍천 재해예방사업)(전환사업)	시설비	5,184,000	2,655,386	준공기한 미도래
안전총괄과	지방하천정비 (기세곡천 재해예방사업)(전환사업)	시설비	10,037,700	7,715,553	준공기한 미도래
도시계획과	도시재생뉴딜사업 (1000년의 화원, 다시 꽃피다)	시설비	6,816,500	6,268,771	준공기한 미도래
공원녹지과	다사 만남의 광장 리모델링	시설비	1,696,400	1,626,790	사전 및 행정절차 이행지연

## 7. 검토의견

- 이번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 9,853억 원 보다 548억 원(증5.56 %)이 증액된 1조 401억 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당초예산 9,840억 원보다 516억 원 증액된 1조 356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3억 원보다 31억 원 증액된 44억 원입니다.
-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중에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 52억 원, 세외수입으로 도로점용료, 각종 시설사용료 등 27억 원, 이전재원으로 지방교부세 361억 원, 국·시비 보조금 41억 원, 보조금반환금 등 35억 원으로 총 51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불용액 및 이월액 최소화를 위하여 기정예산 중 당해연도 내 집행 불가능한 사업비를 감편성하고, 군의 미래 발전 토대 마련을 위한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으로 66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이번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23년을 마무리하는 결산 추경으로 이월액,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국·시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조정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 2023년 제4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1. 의안번호: 제2415호
2. 제 출 일: 2023년 12월 6일
3. 제 출 자: 달성군수
4. 제안사유

○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맞추어 행정안전부의 교부세 등 세입 증액에 따른 여유 재원(660억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하여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치수사업 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예수금원리금상환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함.

## 5. 주요내용

- 재정안정화계정 수입 및 지출 변경 계획
- 수입계획 중 일반회계 전입금: 증 660억 원
  - 지출계획 중 재정안정화계정 예치금: 증 660억 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부사업(편성목)	경정액	기정액	증 감
수입계획	· 일반회계 전입금	66,000	0	66,000
지출계획	· 재정안정화계정 예치금	271,009	205,009	66,000

○ 통합계정 지출 변경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부사업(편성목)	경정액	기정액	증 감
수입계획	· 공공예금 이자수입	157	94	63
지출계획	<b>지출 총계</b>	<b>6,347</b>	<b>6,284</b>	<b>63</b>
	· 통합계정 예치금	2,961	5,957	△2,996
	· 예수금원리금 상환	3,386	327	3,059

## 6.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지방재정법」

## 7. 검토의견

- 2023년도 제4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맞추어 지방세, 교부세 등 세입 증액과 당해연도 내 집행 불가능한 사업비 및 집행잔액 감액 그리고, 치수사업 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발생 등으로 인한 일반회계 여유재원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전출하여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치수사업 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예수금원리금상환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 기금의 수입계획이 일반회계 전입금 660억 원이 증액된 660억 원이며, 예치금 지출계획이 660억 원이 증액되어 2,710억 9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치수사업 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예수금원리금상환액이 29억 1천 7백만 원 증액된 32억 4천 4백만 원으로 변경되었으며, 예수금이자상환액이 1억 4천 2백만 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 본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결과 기금 운영이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